

월간
재정포럼

2017. December_Vol.258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2

권두칼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이렇게 해보자 | 배준호

현안분석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 홍범교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 김빛마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7년 세법개정안 미 하원 및 상원 통과 외

CONTENTS

권두칼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이렇게 해보자 · 배준호 02

현안분석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 홍범교 06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 김빛마로 3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7년 세법개정안 미 하원 및 상원 통과 외 57

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89

정책흐름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94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100

10월말 관리재정수지, 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개선 103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105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이렇게 해보자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출범 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궁금하다. 그간의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근간을 ‘슬림 경영’에 두었다. 대상 기관과 시기에 따라 정책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30여년간의 큰 흐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청년층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6년간, 전체 고용이 24.4% 늘었다. 상용직이 32.4% 늘고 임시 일용직이 10.3% 줄어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상용직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적지 않아 숫자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공공부문 고용증대 정책과 일자리 창출

지난 6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은 별로 늘지 않았다. 공무원이 포함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고용 증가율은 2.6%로 다른 분야보다 낮다(고용이 줄어든 광업 제외). 증가율이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은 53.1%로, 평균 24.4%의 배 이상이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것은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슬림 경영 등 통상적인 혁신 작업에 집중했다는 사실이다. 서비스 가격의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 방만 경영의 해소를 통한 적자 축소와 국민 부담 증가 억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문제라고 판단한 새 정부는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용 증대에 목표수치를 제시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기 중 정부·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률 7.6%를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 852곳의 비정규직 31만명 중 15만명 정도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념할 점은 고용을 늘린다고 부가가치가 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에서 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매출 등 수입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보수 증가분만큼 영업이익 등이 줄어들 수 있다. 늘어난 고용이 수입 증대에 기여하면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부의 지원 예산 제약과 물가 인상 압력에 따른 공공서비스 가격 통제로 수입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고용이 기존 직원의 인건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 직원 급여의 상승 폭 인하 내지 실질적 급여 인하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어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필자는 2013년 4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주문한 바 있다.¹⁾ 그런데 그때 주문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4년의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직장인데 봉급은 많고 변화를 꺼리는 곳’, ‘방만 경영으로 쓰지 않아도 될 재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기관’, ‘빛이 걱정되는 곳’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변함이 없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등 혁신 작업도 우리은행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2010)에 따르면 24개 공기업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3.0%(전체 공공기관 4.7%)에서 2008년에 2.3%(동 3.6%)로 줄었다. 2016년에는 더 줄었을 것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의 고용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종사자 수 1%를 조금 넘지만 감소세다.

늘어날 고용에 따른 부작용 대비책 함께 마련해야

공공기관이 경제성장을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지만,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등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와 경쟁 압력의 유효 활용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여지는 많다. 중요한 것은 상업성이 약해 공공성에서 존립의의를

.....
늘어난 고용이 기존 직원의 인건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 직원 급여의 상승 폭 인하 내지 실질적 급여 인하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1) <http://blog.naver.com/kipfmanager/40185937177>

.....
**공공기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 증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직원 후생
 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혁신적 조치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직원 수가 1만 4천명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자. 주력 업무의 전환과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직원 다수를 보험료 징수가 아닌 건강증진 분야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유효 활용하면, 치매와 고혈압·당뇨병·비만·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의 발병을 줄여 의료비 억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나아가 이와 비슷한 방식이 다른 준공공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 증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직원 후생 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래전부터의 추진해온 혁신 전략도 여전히 유효한바, 상업성이 강한 기관에선 1인당 생산성을 높여 부채 감소 등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를 높이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선 주력 업무의 전환과 인력 재배치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발표(12월 11일자)대로 관련 임직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당사자의 채용을 취소함으로써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I. 서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ong@kipf.re.kr)

체납국세의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세수 일실과 국가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방편의 하나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 하기도 한다.

국가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찬반 논의가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과적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본질적인 사무가 아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 위에 체납국세 위탁징수의 실행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체납자의 권리보호이다. 민간위탁에 의한 징수가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민간에 위탁하는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탁기관의 과잉 징수로 인하여 체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소의 논란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탁징수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위탁 여부, 위임사무의 종류,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 체납국세의 위탁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유형별, 체납금액이나 기간별 징수율 등 민간

* 본고는 저자가 공동연구로 수행한, 홍범교·김재진 「체납국세 위탁징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탁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2013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평균 징수율은 1.01%로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체납국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0.65% 수준으로 커다란 기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는 체납 건 자체가 국세청에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 건이기 때문에 징수액이나 징수율만을 보고 무조건 낮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청 인력 증원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할 때 동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시행한 지 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국세위탁징수업무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시행한 지
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위탁징수업무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체납국세 및 위탁징수제도 현황

1. 우리나라 체납국세 발생 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약 26.6조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표 II-1>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체납발생총액은 총징수결정액 대비 11.2%이며, 당해 연도 신규발생 체납액 18.7조원은 총징수결정액의 7.9%에 해당한다.

2015년에 정리된
 체납국세 19.3조원 가운데,
 현금 정리된 금액은
 9.6조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표 II-1〉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총징수결정액		1,989,020	2,110,953	2,087,458	2,210,542	2,370,003	10,767,976
체납 발생 총액	소계	233,386	252,058	252,418	267,932	265,857	1,271,651
	전년이월	49,257	54,601	59,089	65,400	78,482	306,829
	신규발생	184,129	197,457	193,329	202,532	187,375	964,822
정리 실적	소계	178,785	192,969	187,018	189,450	193,421	941,643
	현금정리	81,511	85,133	89,001	94,192	95,818	445,655
	정리보류 ¹⁾	78,804	87,965	77,592	78,585	80,093	403,039
	기타	18,470	19,871	20,425	16,673	17,510	92,949
정리 중 체납 ²⁾		54,601	59,089	65,400	78,482	72,436	330,008

주: 1)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체납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체납처분을 일단 종결시키는 절차

2) 체납발생총액에서 현금정리되었거나 정리보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계속 체납 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익년도의 전년이월 분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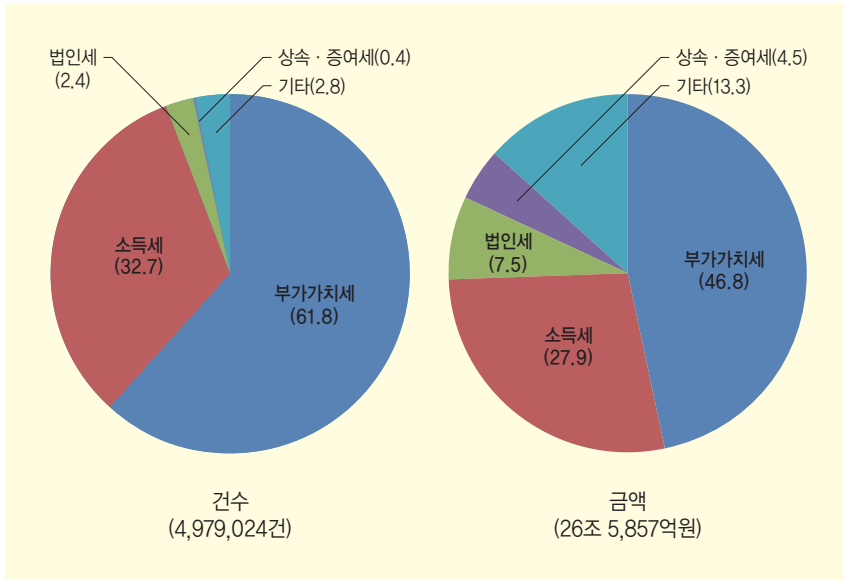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15년 말 기준 국세체납발생 총액 26.6조원 가운데 약 19.3조원이 정리되었다. 2015년에 정리된 체납국세 19.3조원 가운데, 현금 정리된 금액은 9.6조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약 30%에 해당하는 8조원 정도가 정리보류되었으며, 전체 체납발생총액에서 상기 19.3조원을 제외한 약 7.2조원은 2016년으로 이월되었다. 이월되는 체납세금은 2011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16년에만 다소 감소하였다.

세목별로 체납세금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II-1]을 보면 2015년도 말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은 약 308만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며, 금액은 약 12.4조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약 163만건으로 전체의 33%, 금액으로는 약 7.4조원으로 28%를 차지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약 11.8만건, 금액으로 약 2조원이 체납세금이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약 1.8만건에 1.2조원 정도가 체납세금이다.

[그림 II-1] 세목별 체납발생규모 비중

(단위: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국세청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 제한, 포상금 지급,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표 II-2〉 참조). 근본적으로 국세체납 징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인력충원 절차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체납징수인력 증원을 바탕으로 한 체납징수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체납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위탁하여 국세체납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제한, 포상금 지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시장의 경쟁원리로 징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체납국세 징수는 국가의 세금환수가 아닌 기업의 영리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비판도 있다.

〈표 II-2〉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제도

구분	관련 법령	제도 내용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	「국세징수법」 제7조의4	-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보유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
포상금 지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20억원 범위 안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등

출처: 저자 작성

2. 우리나라의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 및 현황

가. 체납국세 위탁징수의 법적 근거

정부의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법 제3항은 위탁할 수 있는 소관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기 법 제3항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이론적으로 상기 제3항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리도 있으나, 독촉단계에 해당하는 우편·전화 안내, 방문 컨설팅,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단순반복 업무’는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¹⁾ 그러나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시장의 경쟁원리로 징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체납국세 징수는 국가의 세금환수가 아닌 기업의 영리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비판도 있다.

1) 김진수·김재진(2011), p. 97.

나. 체납국세 위탁징수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를 근거로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催告)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② 체납자의 재산 조사 ③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동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체납 위탁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다.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II-3〉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부터
위탁징수업무를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약 5.8조원의
체납액과 약 43만건을
수탁받았으며 체납자는
약 11만명에 달한다.

〈표 II-3〉 국세체납 위탁수수료 체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출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다. 체납국세 위탁징수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부터 위탁징수업무를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약 5.8조원의 체납액과 약 43만건을 수탁받았으며 체납자는 약 11만명에 달한다(〈표 II-4〉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연간 약 1조원 이상이고, 수탁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자 수는 2013년도 약 1만 6천명 수준에서 2016년도 약 4만 4천명 수준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표 II-4〉 연도별 위탁징수 수탁 현황

(단위: 억원, 건, 명)

수탁연도	체납액	체납 건수	체납자 수
2013년	10,503	54,330	16,176
	(인당) 0.65	(인당) 3.4	(개인) 13,692
	(건당) 0.19		(법인) 2,484
2014년	10,719	71,894	19,172
	(인당) 0.56	(인당) 3.7	(개인) 15,592
	(건당) 0.15		(법인) 3,580
2015년	16,702	147,232	32,632
	(인당) 0.51	(인당) 4.5	(개인) 23,308
	(건당) 0.11		(법인) 9,324
2016년	19,582	158,466	43,882
	(인당) 0.45	(인당) 3.6	(개인) 32,730
	(건당) 0.12		(법인) 11,152
합계	57,506	431,922	111,862 ¹⁾

주: 1) 체납자가 위탁차수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체납자 수는 111,846명임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수탁건을 체납 규모에 따라 분류해보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약 6.4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약 1.6조원에 이른다(〈표 II-5〉 참조). 1억원 이상의 체납자 수는 약 1만명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으로 보면 약 2.7조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한다. 1억원 미만의 체납자 수가 전체의 약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체납금액은 전체의 약 54%로 약 3조원 정도이다. 1억원 미만의 수탁 건 중에는 약 7,500건을 징수하여 546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두었고, 1억원 이상의 수탁 건에 대해서는 170건을 징수하여 약 3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표 II-5〉 체납 규모별 체납자 현황(2013~2016년)

(단위: 명, 억원, 건, %)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징수건수	징수액
1천만원 미만	20,295 (18.1)	1,478 (2.6)	7,481 (97.8)	546 (94.0)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63,580 (56.9)	16,213 (28.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638 (15.8)	13,264 (23.1)		
1억원 이상	10,333 (9.2)	26,551 (46.1)	170 (2.2)	35 (6.0)
합 계	111,846 (100.0)	57,506 (100.0)	7,651 (100.0)	581 (100.0)

주: () 안의 숫자는 비중임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체납징수업무에 대한 손익현황은 〈표 II-6〉과 같다. 2013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조 503억원이며 약 18.7억원이 징수되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1.5억원이며 징수 업무를 진행하며 지출된 비용은 12.3억원이 발생하여 1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위탁된 체납액 약 5.8조원에 대해서 2016년도에 29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23.7억원, 지출비용은 32.9억원으로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1억원 이상의 체납자 수는 약 1만명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으로 보면 약 2.7조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1%를 차지한다. 1억원 미만의 체납자 수가 전체의 약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체납금액은 전체의 약 54%로 약 3조원 정도이다.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1.26%로서 법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0.31%의 약 4배 수준이며, 위탁받은 체납자에 대한 연령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업무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 수탁 체납금액		10,503	21,222	37,924	57,506	
징수		18.7	114.3	155	292	
수익(A)		1.5	8.8	12.1	23.7	
원가	직접비	인건비	5.8	10.8	15.5	20
		사업비	0.6	1.7	2.2	2.2
		소계	6.4	12.5	17.7	22.2
	간접비	5.9	7.9	10.7	10.7	
	소계(B)	12.3	20.4	28.4	32.9	
손익(A-B)		△10.8	△11.6	△16.3	△9.2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탁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징수 수탁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7〉과 같다. 개인 체납자 수는 약 8.5만명이며 법인 체납자 수는 약 2.7만명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으로는 개인이 4.2조원, 법인이 1.5조원, 전체 체납액은 약 5.8조원이다.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1.26%로서 법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0.31%의 약 4배 수준이다.

〈표 II-7〉 개인 및 법인별 수탁 및 징수 현황(2013~2016년)

(단위: 명, 억원, %)

구분	체납자 수(A)	체납액(B)	징수금액	징수율	점유비	
					인원(A/C)	체납액(B/D)
개인	85,264	42,157	531.5	1.26	76.2	73.3
법인	26,582	15,349	49.2	0.31	23.8	26.7
합계	111,846(C)	57,506(D)	580.7	1.01	100.0	100.0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위탁받은 체납자에 대한 연령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8〉 참고). 약 3만명으로 체납자 수가 가장 많은 1960년대생은 체납액이 약 1.5조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1.27%를 나타내고 있다. 1970년대생은 전체 연령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체납자 수와 체납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1.61%의 두 번째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율은 3.15%로서 다른 연령대의 징수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8〉 개인 체납자 연령별 수탁 및 징수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점유비	
					인원	체납액
1930년 이전	948	668	3.2	0.48	1.11	1.58
1930년대생	3,452	2,325	11.5	0.49	4.05	5.52
1940년대생	7,000	3,978	26.1	0.66	8.21	9.44
1950년대생	18,852	9,973	98.3	0.99	22.11	23.66
1960년대생	30,399	14,568	184.5	1.27	35.65	34.56
1970년대생	18,454	8,247	132.4	1.61	21.64	19.56
1980년 이후	6,159	2,398	75.5	3.15	7.22	5.69
합계	85,264	42,157	531.5	1.01	100	100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을 체납 경과기간과 징수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2~4년 정도 경과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가장 좋았으며 그다음으로 4~6년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 참조).

〈표 II-9〉 국세체납액 체납발생 경과기간별 징수실적

(단위: 억원, %)

체납경과기간	수탁 체납액	징수실적	징수율
2년 이내 ¹⁾	3,014	15.2	0.50
2년~4년	12,418	158.5	1.28
4년~6년	13,783	121.9	0.88
6년~10년	6,698	36.3	0.54
합계	47,135	365.3	0.84

주: 1) 최근 수탁되어 납부촉구 활동이 2개월에 불과하여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2016년 7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을
체납경과기간과 징수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2~4년 정도 경과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가장 좋았다.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08년 의회 연차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면에서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민간위탁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였다.

Ⅲ. 주요국의 체납국세 위탁징수 제도

1. 미국의 민간위탁 제도

가. 배경 및 변천 과정

미국 연방정부는 2004년 「고용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을 통해 민간추심회사(Private Collection Agency, PCA)에 체납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내국세입법(IRC) §6306은 체납액 중 일정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민간추심회사에 체납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²⁾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이 시행되었으나, 동시에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민간위탁기관이 체납자의 권리 존중과 사생활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제도의 폐지를 위한 내국세법 개정 법률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미국 국세청(IRS)의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2008년 의회 연차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면에서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민간위탁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이 민간위탁기관보다 3배나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의 침단 징수기법을 배우고자 하였던 원래의 목적도 별로 달성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체납자의 순응도를 제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영리추구 기관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³⁾ 이러한 민간위탁제도의 폐단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미국 국세청은 2009년부터 민간추심회사와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체납징수 민간위탁 제도는 중단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또한 체납국세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미국 국세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동징수시스템(Automated Collection System)과 민간위탁 체납징수(Private Debt Collection)를 비교하였다.⁴⁾ 그 결과를 정리한 <표 Ⅲ-1>을 보면, 체납징수액 1달러당 비용이나 징수율 등의 지표에서 국세청의 자동징수시스템(ACS)이 민간위탁(PDC)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06~2009년 민간위탁 시행 시, 미국 국세청은 우선순위가 높은 체납 계정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10만달러 미만의 체납 계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였음

3) IRS(2008), p. 9.

4) IRS(2009), pp. 3~10.

〈표 III-1〉 미국 국세청의 ACS와 민간 PDC의 체납징수비용 효율성¹⁾

(단위: 달러, %)

구분	체납징수액 (A)	징수비용	체납징수액 1달러당 비용 ²⁾	체납액 (B)	징수율(A/B)
ACS	775,302	53,545	0.07	6,800,000	11.4
PDC	443,438	105,621	0.24	11,700,000	3.8

주: 1) 2006년 1년 동안 진행된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 500개의 표본추출을 통해 나타난 결과임

2) 징수비용 1달러당 체납징수액은 각각 14.48달러와 4.19달러임

출처: IRS(2009), p. 7.

이에 대하여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에서는 국세청의 보고서가 관련 징수비용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여 납세협력비용 등 포괄적인 측정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⁵⁾ 2011년 미국 재무부 산하의 세무감찰관 보고서⁶⁾에서도 민간위탁기관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다시 국세청으로 회수된 체납 건이 미정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징수를 위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내 고속도로 증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일부를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2015년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예산법안에 서명함으로써⁷⁾ 체납국세징수 민간위탁업무가 2017년 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나. 체납징수 민간위탁 내용

2009년도에 중단되었던 미국의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관련 법령⁸⁾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체납자의 소재 확인, 체납액에 대한 완납 요청 및 완납 불가 시 분할 납부 제인⁹⁾ 등이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체납액 조정, 체납징수를 위한 강제적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민간위탁기관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징수업무 기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한다.¹⁰⁾ 피심사기관의 과거업무 실적, 법률위반 행위, 세금징수

이에 대하여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에서는 국세청의 보고서가 관련 징수비용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여 납세협력비용 등 포괄적인 측정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5) GAO(2010), pp. 6~8.

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1) (<https://www.treasury.gov/tigta/auditreports/2011reports/201130114fr.html>)

7) The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The FAST Act) §32102

8) IRC §6306, FAST Act §32102 등

9) 분할납부의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됨

10) 1년간의 업무성과, 체납자의 만족도 등의 평가 진행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민간위탁기관은
공정채무추심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 및
납세자 권리를
준수해야 하며, 국세청은
채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활동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하며, 피심사기관의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국세청의 업무집행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미국 국세청은 비활성 체납세금(inactive tax receivable) 추심을 위해 4개의 민간추심회사를 선정하였는데, 비활성 체납세금이란 다음과 같은 체납세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납세자를 찾을 수 없어서 활성 목록에서 제외된 체납세금, 조세시효가 3분의 1 이상 지났는데 국세청 담당직원이 배정되지 않은 체납세금, 활성 목록에 있으나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연락이 1년 넘게 되지 않은 체납세금 등이다.

민간위탁기관이 진행하는 체납징수업무에 있어서 추심에서 제외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조정신청¹¹⁾ 중인 경우 ② 세금 분할 납부 중인 경우 ③ 재산 압류 혹은 재판, 수사 중인 상태인 경우 ④ 납세자의 사망 및 18세 미만 등.

국세청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국세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체납징수 위탁 대상을 선정 ② 체납자에게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체납징수한다는 것을 서신으로 통보 ③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자의 체납계정 목록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

민간위탁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통보해야 하며, 고지서에는 체납자의 계정이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위탁기관에 전달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전화로 연락을 시작할 수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체납자의 주소지로 연락하되,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회사 혹은 사업장으로 연락할 수 없다. 체납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 체납자에게 연락이 될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체납세액 완납 혹은 분할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공정채무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의 소비자 보호 조항 및 납세자 권리를 준수해야 하며, 국세청은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활동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민간위탁기관과 체납징수업무 담당자의 규정 위반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감시활동에는 체납징수업무 담당자와 체납자 간의 통화기록 및 내용 검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설문평가, 민간위탁기관에 대

11) 체납자가 재산 및 자산 매각 후에도 총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IRS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IRS는 체납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체납금액을 조정함

한 정기 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담부서를 활용하여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 평가 및 관리감독 활동을 진행한다. 체납자 권리보호를 위해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의 체납징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활동도 진행하며, 체납자 권리보호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 체납징수업무 담당자는 국세청의 체납징수업무 담당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의 체납징수업무 담당자는 과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납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열람 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¹²⁾

체납징수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세액의 25%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내국세법 §6306(e)에 따라 총징수액의 25%와 특수집행인력 프로그램(Special Compliance Personnel Program)에 의한 징수액¹³⁾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 호주의 민간위탁 제도

가. 배경 및 변천 과정

1999년 12월, 호주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은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권고하였으며 2001~2002년부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2005년에 체납액 규모가 최고조에 달하여 체납액이 총징수액의 약 28%를 차지하였다.¹⁴⁾ 이에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도에 소액 체납 건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징수제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시행하였다 (<표Ⅲ-2> 참조).

파일럿 테스트에서 호주 국세청은 1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한 11,113건(체납액으로 약 6천만호주달러)의 체납 건을 37만호주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탁하였다. 민간위탁기관(External Debt Collection Agency)에 위탁된 체납 건 중 2,136건(19%)이 전액 회수되었고, 3,668건(33%)은 지불약정을 체결하였다.

호주 국세청은 체납액이 증가하자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도에 체납 건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징수제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12) 정보유출 시 최대 5,000달러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무단으로 정보 열람 시 1,000달러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13) 특수집행인력이란 내국세법 §6307에 의하여 국세청 내의 체납징수 시스템인 ACS(콜 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용된 인력을 말함

14) 안중석 외(2012), p. 57.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며 따라 호주는 조세징수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징수를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표 III-2〉 파일럿 테스트 결과

(단위: 건, 호주달러)

테스트 일자	위탁세목	위탁건수	위탁총액	징수금액	민간위탁기관 징수금액
2006.4.4.	활동보고서 ¹⁾ 세목, 소득세	6,713	38,590,911	21,771,927	16,645,701
2006.5.22.	활동보고서 (inactive 보고서 포함) 세목, 소득세	4,400	21,383,106	5,441,452	4,439,596
합계		11,113	59,974,017	27,213,424	21,085,297

주: 1) 호주의 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는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양식으로서 관련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할분 및 원천분, 부가급여세, 고급 자동차세 등이 있음
출처: ANAO(2012), p. 50.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며 따라 호주는 조세징수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을 개정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징수를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은 과세관청의 체납징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체납액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 납부 요청을 하거나 납세자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위탁하는 체납 건에 대한 징수 책임을 지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납세자의 개인 신상 확인 정보와 체납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Tax file number)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으며 체납자를 체납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기관의 체납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한적이며 과세관청의 시스템에 대하여 제한적인 접근만이 허용된다.

도입 초기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체납징수 위탁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혼재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징수에 대해 지지하는 이해관계자는 체납세금을 상업채무와 동등하게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위탁징수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체납징수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는 민간위탁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징수를 맡겨서는 안 되며, 민간위탁기관은 추심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체납징수 민간위탁 내용

민간위탁기관은 과세관청의 체납징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 전액 또는 일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납부요청을 하거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4개의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자의 신원정보, 연락처, 주소, 체납세목 및 액수와 벌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9시부터 5시까지의 일과시간에 연락할 수 있다.

호주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함께 부여했다. 체납자에게 체납액 전액 지불 요구 권한, 체납액이 50만호주달러보다 적고 체납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에 대하여 납부 계획을 제인할 권한, 완납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선불금을 받고 남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일정 및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권한, 최대 2만 5천호주달러까지 체납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 등이다.

호주 국세청은 단일 채무(Non-complex)인지, 소액 체납액(Low-value)인지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준을 충족시키는 체납 건을 코드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종류는 소득세, 활동보고서상의 세금, 퇴직연금 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Debt) 등으로서 7만 5천호주달러 이하의 체납세금이며, 체납자가 체납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은 위탁에서 제외한다.

호주 국세청의 민간위탁기관 관리부서는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위탁 모델(Performance Base Referral Allocation Model: PBR)을 개발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할당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과 국세청은 PBR 모델을 통해서 기관별 위탁 가능 건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데, PBR은 재무적 측정과 비재무적 측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재무적 측정 비교는 민간위탁기관이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납 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 6, 12개월 간격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체납징수율을 기반으로 하며, 비재무적 측정은 체납자와의 의사소통 방법과 체납자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국세청과 동일하게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 1988)과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16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 체납징수 담당자는 공개 정보를 보호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는 보안서

민간위탁기관과 국세청은 PBR 모델을 통해서 기관별 위탁 가능 건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데, PBR은 재무적 측정과 비재무적 측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호주 국세청과
민간위탁기관은
주간 절차(Weekly Process)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체납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에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국세청 담당자와 동일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체납자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민간위탁기관의 보안 및 기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은 국세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에 대한 강제적 집행 활동이나 강요활동은 금지된다. 민간위탁기관은 납세자 현장,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기준을 준수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에 체납 건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 국세청은 정보교환 게이트웨이인 주간 절차(Weekly Process)를 통해서 체납 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주간 절차를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전달하는 정보는 위탁하는 체납 건과 재위탁 건, 현재 위탁한 체납자의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체납액 등의 수정된 정보 등이며 위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체납 건에 대한 정보 및 회수 절차 등도 주간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

호주 국세청과 민간위탁기관은 주간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체납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에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주간 절차 단계는 체납 건 분류, 위탁 체납 건 선택, 신규 데이터 추출 및 회수 작업, 민간위탁기관에 데이터 전달 및 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나의 체납 건이 민간위탁기관에 전달되면 주간 절차를 통해서 체납 건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체납 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회수되며, 민간위탁기관에 위탁된 채무는 위탁 후 180일이 되면 국세청으로 다시 회수된다.

민간위탁기관의 수수료는 커미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위임된 체납 건수를 기반으로 지급된다. 즉 위임된 체납액이나 체납세목 등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단일 수수료의 형태로 진행된다. 국세체납 민간위탁 계약 시 처음 2년간은 수수료를 고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수수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호주 국세청은 약 70억호주달러에 해당하는 180만 건의 체납 건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였다. 이 가운데 약 20억호주달러를 회수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에 지급된 수수료는 약 5,400만호주달러였다. 징수율은 위탁금액 대비 약 30%에 이른다.¹⁵⁾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민간위탁기관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위탁된 현황을 <표 Ⅲ-3>에서 살펴보면,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

15) 안종석 외(2012), p. 86.

나 전체적으로 위탁 건수가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감소하였다.

〈표 Ⅲ-3〉 체납징수 민간위탁 현황

(단위: 건)

구분	체납징수 민간기관					합계
	National Credit Management Ltd	Probe	Recoveries	Dun & Bradstreet	Baycorp	
2010~11	104,003	-	104,946	101,786	103,447	414,212
2011~12	10,667	-	110,089	100,055	79,209	300,020
2012~13	-	118,356	151,291	173,214	95,519	538,380
2013~14	-	176,856	114,112	127,847	95,693	514,508
2014~15	-	80,002	55,104	63,265	48,680	247,051
합계		375,214	320,507	364,326	239,892	1,299,939

주: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된 건수임
출처: ATO(2015), pp. 144~145.

2009년 영국 국세청은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2010년 영국 재무부와 합의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의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영국의 민간위탁 제도

가. 배경 및 도입 과정

2008년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국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⁶⁾ 2009년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은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위탁기관(Debt Collection Agency)을 활용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2010년 영국 재무부와 합의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의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¹⁷⁾

파일럿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적인 틀 안에서 영국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민간위탁기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는 이점과 그에 부수되는 비용의 평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국세청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징수 전문 기술에 대한 파악, 체납징수를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 확인,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징수 예상실적 등이다.

파일럿 테스트는 여러 개의 세목들에 대해서 진행되었고,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¹⁸⁾ 자진신고 체납(Self Assessment Debts)의 경우에는 6개월 이

16) NAO, "HMRC Management of Tax Debts," November 20, 2008

17) HMRC, *Debt Management and Banking: Adding Capability & Capability Pilot*, 2010.

18) 안중석 외(2012), p. 92.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국세청은
체납징수업무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상은 장기체납, 6개월 미만은 신규체납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고, 최대 1만 파운드까지의 체납세금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급여세(Pay As You Earn, PAYE)의 경우에는 2007~2008 회계연도 이전의 체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최대 500파운드까지의 체납세금으로 구성하였다. 2종 국가보험 채무(Class 2 National Insurance Debts)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체납 건을 위탁하였으며 최대 700파운드 이하의 체납 건으로 구성하였다. 2종 국가보험 연체 벌금(Class 2 National Insurance Late Registration Penalties)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과 100파운드 미만의 체납 건으로 구성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국세청은 체납징수업무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1) 민간위탁기관은 체납 국세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에서 요구한 IT, 재무 및 회계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민간위탁기관에서 체납자에게 수행한 우편 발송, 전화 및 문자 전송 등의 업무에 있어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다.
- 2) 국세청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과 민간위탁기관에 할당하는 체납 건의 액수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갖추었다.
- 3) 민간위탁기관 활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파일럿 테스트 초기에는 고객 정보 유출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고객 정보 관리 방안에 대한 브리핑과 위반 여부 결과 제시를 통해 민간위탁 징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일럿 테스트의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도 있었다. 파일럿 테스트로 진행된 체납액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추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소액 채무가 아닌 고액 체납 건을 위탁할 경우 추심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체납국세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위탁 징수를 위해 영국 국세청과 민간위탁기관

은 국세청의 내부규정,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의 규정과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에서 사용하는 계약규정을 적용하여 체납세금 위탁징수에 관한 기본 업무 규정을 구축하였다.

영국 국세청은 체납자들에게 체납징수에 관한 업무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자들의 불만 혹은 상담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체납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통합부채관리시스템(Integrated Debt Management System)을 통해서 진행하며, 통보의 내용에는 국세청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거부할 시 민간위탁기관으로 체납 건이 위탁되는 것을 공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체납징수 민간위탁 내용

영국 국세청은 2010년 1억 4천만파운드 규모의 체납국세징수를 4개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였다. 2011년에는 위탁기관을 10개로 늘리고 10억파운드를 위탁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8억 8천만파운드를 위탁하였다. 국세청은 현재 13개의 민간위탁기관에 국세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 이후 2012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되는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까지 확대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체납징수 위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민간위탁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체납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체납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전화, 문자, 보이스메일, 정기적 이메일,¹⁹⁾ 소셜 네트워크,²⁰⁾ 우편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 관련된 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체납자는 체납액에 대해 일시에 상환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 혹은 민간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할부 등 다른 방식의 지불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국세청 혹은 민간위탁기관과의 협이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체납 건은 법원으로 이관되며 법원의 소송은 소액청구 절차, 판결 등으로 진행된다.

민간위탁기관은 법적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의 부채징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로 오해

영국 국세청은 체납자들에게 체납징수에 관한 업무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자들의 불만 혹은 상담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19) 이메일을 7일의 간격을 두고 체납자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조인, 독촉장, 강한 경고(Harsh reminder), 법원 경고의 순서로 보낼 수 있음

20) 페이스북, LinkedIn 등

대표적인 해외사례의 경우, 모두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는 문서 양식의 사용, 일과 시간(오전 9시부터 6시) 이후에 체납자에게 연락, 회사 전화가 아닌 개인 전화로 연락,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언급,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위협, 체납 사실을 공개된 공간(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화 메시지 저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체납자의 정보를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유출하는 행위 등.

영국 국세청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수수료를 추심에 성공한 체납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성공보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체납징수 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민간위탁기관의 권한을 우편발송, 전화접촉, 문자전송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체납징수업무 활동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IV. 위탁징수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해외사례의 경우, 모두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위탁징수 제도는 외국과 같은 민간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아니므로 독점적 지위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체납국세 위탁징수를 맡을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순수 경쟁시스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잉징수 유인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위탁기관인 정부와 수탁기관인 공공기관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그 효율성이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체납징수 위탁제도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체납징수 대상의 이원화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의 위탁방식은 국세청이 연간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임의로 위탁 건수와 대상을 정하여 위탁하고 있는 방식이다. 현행의 수수료 지급방식이 성공 보수 방식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회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탁 건수와 유형 등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연간 수탁건수, 수탁받는 체납 건의 유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연간 징수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징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위탁징수율이 높은 호주의 경우를 보면 국세청과 민간위탁기관이 주간 절차자를 통하여 매주 민간위탁을 위한 체납자 선정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단일채무(단일 세목), 소액채무(7만 5천호주달러 이하)와 같은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 개선방안

1) 체납징수 대상의 이원화

우리도 위탁기준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액 위주의 위탁 기준을 세운다면,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²¹⁾ <표 IV-1>은 국세체납 위탁징수를 시작한 2013년도부터 2016년 6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체납액에 따른 징수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억원 미만 체납 건의 경우 징수율이 1.22%로, 1억원 이상의 0.18%에 비하여 7배 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인다. 폐업 등으로 납부추구 대상이 소멸한 법인을 제외한 개인 체납자의 징수율은 1.26%로 법인 징수율 0.31%의 약 4배 정도에 달함을 이미 <표 II-7>에서 살펴본 바 있다.

위탁기준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10만달러 이하, 호주는 7만 5천 호주달러 이하의 체납국세를 민간위탁하고 있음

체납징수 대상의
이원화를 통하여
국세청이 직접 담당하는
체납징수 대상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위탁체납징수
대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IV-1〉 국세체납액 기준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1억원 미만	30,137	364.9	1.22
1억원 이상	16,962	30.4	0.18
합계	47,099	395.3	0.84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2016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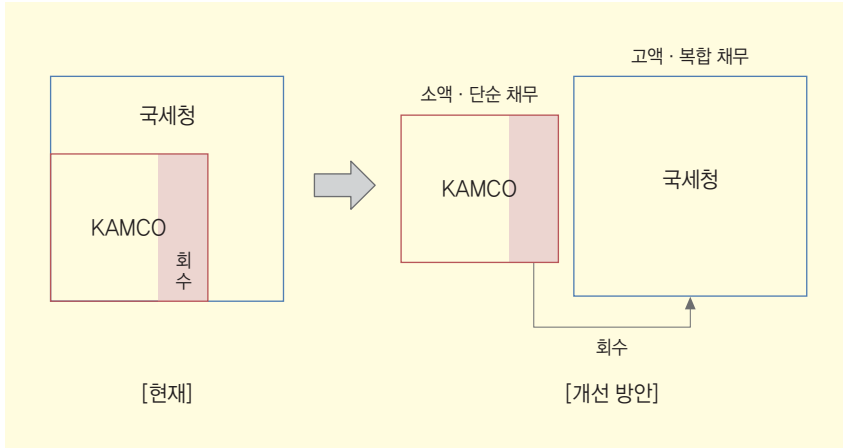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체납징수 대상의 이원화를 통하여 국세청이 직접 담당하는 체납징수 대상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위탁체납징수 대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²²⁾ 체납자에 대한 보유 정보의 양적·질적 우위와 ‘세금 징수’의 궁극적인 책임자라는 측면에서 국세청에서는 고액·악성채무에 집중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소액·단순채무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동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악성 채무를 도맡게 되므로 국세청의 징수율은 현재보다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세금의 징수는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의 책임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은 체납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징수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두 기관의 직접적인 징수율 비교는 의미가 없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국세 위탁징수 활동을 하면서 체납자들을 접촉한 결과,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하여 독촉장이나 최고서 발급 이후에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응답은 소액·단순채무로서 일정기간 이내의 체납건은 체납사실에 대한 고지와 독촉만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²³⁾

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후 일정기간 동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다시 회수하는 건만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정리보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징수 노력이 투여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음

23) 미국의 경우, 2014년도에 진행된 총체납징수 건 중 약 60%가 통지 단계에서 징수가 완료됨

[그림 IV-1] 체납징수 대상의 이원화



출처: 저자 작성

이를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 시행령 제1호에 금액기준(채납자별 체납액 1억원 이상)이 있으나 제2호의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1억원 미만도 현실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을 모두 위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기준이다. 제2호의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보다 체납자에 대한 정보 열위에 있고, 세무공무원과 같은 질문권도 없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²⁴⁾ 현재와 같은 규정보다는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는 체납징수의 대상이 일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징수율의 비교로부터 받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장기 방안

중장기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징수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정리보류하는 체납 건을 모두 일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즉 1차적인 체납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 건을 모두 2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 다시 한 번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2단계

체납징수의 대상이 일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징수율의 비교로부터 받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에서 재산조사 등을 위하여 질문권이 확대되면 좋겠으나, 「공정추심법」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상 질문권한의 확대보다는 징수의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활동으로
 징수하는 체납국세는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커다란
 기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할 경우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체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이다. 동 방안에 따르면 위탁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총수수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수수료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타당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13년 위탁징수를 시작한 이래 2016년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누적 체납액은 580.7억원이며, 징수율로 보면 1.01%이다. 징수율만을 보면 그다지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 건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나 징수율 자체가 무조건 낮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수료 대비 체납징수액 비율(B/C 비율)이 2013년 이래로 12를 상회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수수료(C₁)가 아니라,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계상 비용(C₂)을 이용하여 계산한 B/C 비율도 시작연도인 2013년을 제외하면 5.5 이상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IV-2> KAMCO의 체납징수위탁 사업의 B/C 비율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징수금액(B)	18.7	114.3	155	292	580
수수료(C ₁)	1.5	8.8	12.1	23.7	46.1
회계상 비용(C ₂)	12.3	20.4	28.4	32.9	94.0
B/C ₁ 비율	12.5	13.0	12.8	12.3	12.6
B/C ₂ 비율	1.5	5.6	5.5	8.9	6.2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활동으로 징수하는 체납국세는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커다란 기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할 경우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체납국세 위탁은 국세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 건수를 늘리게 되면 지금보다 국세청의 위탁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 따라 건당 수수료는 비용 효율적인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징수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비용 대비 비율이 매우 양호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위탁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체납징수 시스템이 앞서 체납징수 대상의 이원화와 다른 점은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체납국세 징수업무가 완전히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원화 방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징수 대상을 분리함으로써 양 기관이 서로 다른 특정 징수범위에만 집중하여 대외적으로는 기관 간 징수율의 직접 비교와 같은 외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2단계 시스템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일단 정리보류한 체납 건을 모두 위탁받아 한 번 더 징수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동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일실을 방지하는 체납징수업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서 유기적인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일실을 방지하는 체납징수업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서 유기적인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수수료 체계의 개편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의 성과보수체계는 모든 체납 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방문 등의 업무 수행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징수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수수료 수입이 실제 징수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I-6〉 참조).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수수료 체계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세금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채권으로서 ‘할인 판매’한다는 인상을 준다. 호주가 성공보수체계가 아닌 건별 일정액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의 징수’를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에 ‘할인 판매’함으로써, 민간으로 하여금 더 많이 징수할수록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하에서 과잉징수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 영국에서도 성공보수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체납징수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는 ‘단순사무의 위탁’이라는 면에서 호주의 수수료 체계가 논리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개선방안

따라서 현행 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 체계를 건별 일정액의 수수료 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초에 체납국세의 위탁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민간기관과 같이 수익창출이
최우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징수의 위탁'이라는
점에서는 건별 일정액의
수수료 체계가 논리적으로
더 적합하다.**

최초로 허용할 당시의 논리도 '독촉' 단계에 해당하는 우편·전화 안내, 방문 컨설팅,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단순반복 업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정행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건별 일정액을 수수하는 것이 호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세금징수업무의 '단순 위탁'이라는 논리에 보다 적합한 것이다.

성공보수체계는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과잉징수하게 함으로써 채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민간기관과 같이 수익창출이 최우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징수의 위탁'이라는 점에서는 건별 일정액의 수수료 체계가 논리적으로 더 적합하다. 과거 통계를 이용하여 위탁징수에 들어가는 건당 평균 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일정액의 총마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위탁기준의 명확화에 따라 위탁계약의 금액 기준 등이 설정되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과거 통계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위탁건수 및 금액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채납징수 대상의 이원화와 연관지어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액·단순 건을 위탁함에 따라 징수가 보다 용이하게 되므로 전환되는 건당 수수료의 책정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갖게 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2단계 채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대량 위탁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건당 수수료의 책정도 기대할 수 있다.

V. 결론


채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납징수 대상을 이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단계 채납징수 시스템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성과보수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건당 정액의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소액·단순채무의 징수율이 고액·복합채무의 징수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액의 경우, 세금채납에 따른 명목적·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는 일반적인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소액의 경우에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징수율은 당연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고액체납의 경우에는 폐업 법인의 경우 등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고자 하여도 실제로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질적·양적 정보의 우위에 있으며 조세징수의 최종 책임자로서 징수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우위에 있는 국세청에서 고액·복합채무에 집중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소액·단순채무를 전담하여 용이하게 징수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수료 대비 체납징수액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 정리보류하는 체납 건을 모두 일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행의 성과보수식 수수료 체계는 체납세금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기관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국세청이 국세의 징수를 다른 기관에 ‘할인 판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에서 제시한 대로 체납징수를 이원화한다면 ‘단순위탁’에 대해서는 정액의 수수료 체계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다.

체납국세의 위탁징수는 이미 시행한 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위탁징수의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세청 인력 증원에 대한 제약 등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폐지할 필요성 내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결국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은 국세징수업무의 주체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을 보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세수 일실을 방지한다는 공동의 목표하에 서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납국세의 위탁징수는 이미 시행한 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위탁징수의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세청 인력 증원에 대한 제약 등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폐지할 필요성 내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 김진수·김재진, 『국세체납징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안종석·정재호·이상엽·홍성훈, 『체납국세 위탁징수 향후 발전방안 및 캠프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12.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내부자료
- ANAO, “The Engagement of External Debt Collection Agencies,” The Audit Report, No. 54 2011–12 Performance Audit, 2012.
- ATO, *Debt Collection*, 2015.
- GAO, *Tax Debt Collection: IRS Could Improve Future Studies by Establishing Appropriate Guidance*, Sep. 2010.
- HMRC, *Debt Management and Banking: Adding Capacity & Capability Pilot*, 2010.
- National Audit Office, “HMRC Management of Tax Debts,” November 20, 2008.
- _____, “Report by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HM Revenue & Customs 2013–2014 Accounts,” July 3, 2014.
- IGT, *A Report to the Assistant Treasurer*, 2015.
- IRS National Taxpayer Advocate, *2008 Annual Report to Congress: Executive Summary*, Dec. 2008.
- IRS, *IRS Private Debt Collection: Cost Effectiveness Study*, March 2009.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Collection Actions Were Not Always Pursued on Cases Returned from the Private Debt Collection Program,” Sep. 2011.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I. 서론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bmrkim@kipf.re.kr)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특히 연간 약 100조원대 규모의 건설공사 중 공공부분이 약 35조~40조원 규모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¹⁾ 공공부분의 비중이 매우 큰 산업 중 하나이다. 또한 건설공사를 통해 완성된 시설물은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건설비용 이외에도 시설물 관리비용(management cost)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건설 단계에서 높은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급(subcontracting)을 통한 생산방식의 특성상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도할 경우 입찰참여자(이하 입찰자)들이 이른바 덤핑입찰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후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를 하거나 하청업체 등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공사의 조달계약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사계약 조달계약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의 충돌로 인해 시대별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가격요소”와 “비(非)가격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도와 달리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사품질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life-cycle cost)을 감소

* 본고를 저자가 수행한 2017년 연구보고서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연구』(2017.12. 발간 예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1) 정훈기(2015) p. 709.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사계약에 적용되었던
낙찰제도 중
가격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도이며,
계약이행 능력 등
비(非)가격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설계된 제도는
종합심사낙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킴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가 변별력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
균 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가격 평가방식에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²⁾

본고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입
찰참여업체의 전문성 및 역량 등 비가격요소 평가의 변별력이 개선되었는지를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공사계약 조달계약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소개한다.

II. 공사계약 낙찰제도

1. 우리나라의 공사계약 낙찰제도

가. 낙찰제도 변천과정

우리나라 공공시설공사의 입찰계약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 제10
조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는 우리나라 입찰계약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어왔다.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행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
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행 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지에 따라 낙찰제도의 성격이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사계
약에 적용되었던 낙찰제도 중 가격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
는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도이며, 계약이행 능력 등 비(非)가격요소의 상대적 중
요도가 높게 설계된 제도는 종합심사낙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설공사 낙찰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표 1〉 참조), 1962년
최저가낙찰제도를 시작으로 1995년 적격심사제도,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의 경제적 여건 및 입찰자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었으며,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2) '최저가 낙찰제 개선했다는 중
합심사제... 원성 자자한 까닭' 조
선비즈, 2017.4.5.
([http://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17/04/04/
201704040359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4/2017040403599.html))(접속일
자: 2017.12.4)

재도입되기도 하였다.

1962년 최저가낙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5년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격요소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의 덤핑입찰 및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94년 10월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논의 끝에 1995년 7월 추정가격³⁾ 100억원 이상 공사에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⁴⁾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미리 결정된 낙찰가능 최소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successful bidder)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적격심사제도는 낙찰자 선정에 있어 비가격요소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최초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최초 시행 이후 소규모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19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적격심사제도가 모든 공사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격심사제도의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에서 대다수 업체가 만점을 받는 등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당시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1년 1월 일부 대형공사에 최저가낙찰제도가 재도입되었다.

이후 최저가낙찰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2006년 5월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도와 저가심의회가 동시 적용되었으나,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등 최저가낙찰제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면서 2016년 1월 새롭게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로 대체되었다. 2017년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3) 추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기액이다.

〈표 1〉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시설공사 낙찰제도 변경 내역

연도	낙찰제도	비고
1962. 01~1971. 12	- 최저가낙찰제도	-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1972. 01~1975. 12	- 부찰제: 예정가격의 80% 이상 입찰자의 평균 입찰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에 대응
1976. 01~1981. 02	- 최저가낙찰제도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변경
1981. 03~1983. 03	- 부찰제: 예정가격 기준 8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한시적 제도입
1983. 04~1990. 03	- 최저가낙찰제도+저가심의제도 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의 경우 심의 - 부찰제: 소규모 공사 1983. 07~1984. 03: 30억원 미만 1984. 04~1985. 03: 20억원 미만 1985. 04~1990. 03: 10억원 미만	-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 도입 - 소규모 공사는 부찰제 적용, 단계적으로 축소
1990. 03~1993. 02	- 최저가낙찰제도+저가심의제도	- 부찰제 폐지 및 최저가낙찰제도 전면 시행
1993. 02~1993. 09	- 최저가낙찰제도: 20억원 이상 1993. 7. PQ ¹⁾ 도입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20억원 미만 예정가격 85% 이상에서 최저가	- 저가심의제도 폐지(객관적 기준 결여)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사에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1993. 09~1995. 07	- 최저가낙찰제도: 100억원 이상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100억원 미만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1995. 07~1996. 12	- 적격심사제도: 100억원 이상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100억원 미만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성수대교 붕괴(1994. 10) 등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적격심사 도입
1997. 01~1999. 09	- 적격심사제도 1997. 01~1999. 02: 고시금액 이상 1999. 02~1999. 09: 30억원 이상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1997. 01~1999. 02: 고시금액 미만 1999. 02~1999. 09: 30억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확대
1999. 09~2000. 12	- 적격심사제도	- 적격심사제도 전면 시행(최저가낙찰제도 폐지)
2001. 01~2003. 12	- 최저가낙찰제도: 10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적격심사 변별력 저하,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 등의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
2003. 12~2006. 05	- 최저가낙찰제도+저가심의제도: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및 저가심의제도 재도입
2006. 05~2016. 01	- 최저가낙찰제도+저가심의제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및 저가심의제도 개선 (2단계 심사제도 도입)
2016. 02~현재	- 종합심사낙찰제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	-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최저가낙찰제도 폐지): 300억원 이상 공사

주: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약자임

출처: 이윤섭 외(2013) pp. 9~10. 〈표 2-1〉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나. 주요 낙찰제도⁵⁾

1) 최저가낙찰제도

최저가낙찰제도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낙찰제도이다. 최초 도입 시에는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일차원 경매제도(single-dimensional auction)의 형태였으나, 이후 “저가심의”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투찰⁶⁾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도록 변형되어 시행되었다.

저가심의회제는 1983년 최초 도입 이후 폐지, 재도입,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최근인 2006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단계 심사방법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저가심의를 받게 되며, 2단계 심사방법 중 1단계에서는 “객관적 심사”를, 2단계에서는 “주관적 심사”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공사종목(이하 공중)⁷⁾이 전체 공중의 20% 이상인 경우 저가심의회에서 탈락하며, 하나의 공중이라도 공중기준금액의 50% 미만이 있는 경우 역시 자동 탈락처리된다. 또한 공중기준금액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 공중 수를 1.5개로 가중하여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단계 심사는 1단계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1단계 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공중의 저가 입찰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단, 낙찰률⁸⁾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심사가 면제된다. 즉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주관적 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2단계 심사는 발주기관과 독립된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저가 사유 인정 기준으로는 장비 조합에 의한 절감,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에 의한 절감,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소요 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 등이 있다.⁹⁾

2) 적격심사제도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낙찰가능 최소점수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가능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가능 최

**최저가낙찰제도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낙찰제도이다.**

5) 시설공사는 크게 설계-시공 분리 방식과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설계-시공 분리방식 대상 공사의 낙찰제도만 다루기로 한다.
6)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공중이란 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종목을 말하며 공중기준금액은 발주자 설계금액을 70% 반영하고, 입찰자의 평균입찰 금액을 30% 반영하여 결정한다.
8) 예정가격 대비 낙찰자의 투찰금액(winner's bid price)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9) 최민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p. 11.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낙찰가능
최소점수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소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가격요소뿐 아니라 기술능력 등 비가격요소를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90년대 말 전면시행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의 평가비중은 공사 규모별로 상이한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사 규모가 클수록 비가격요소의 비중이 증가한다. 계약이행능력 평가 비중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0%에 불과하나,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비가격요소의 비중이 70%, 가격요소의 비중이 30%로 설정되어 있다.

<표 2> 공사규모별 평가비중 및 낙찰가능 최소점수¹⁰⁾

공사 규모 (추정가격 기준)	평가비중(%)		낙찰가능 최소점수
	계약이행능력	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70	30	9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	50	95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	70	9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	80	95
3억원 미만	10	90	95

계약이행능력 등 비가격요소 평가는 공사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등에서 대해서 이루어진다. 가격요소 평가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이 특정 값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설계되어 있다.

3) 종합심사낙찰제도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도 대신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도입목적은 적정 가격 지불을 통한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 기술 경쟁을 통한 공사품질의 제고 및 생애주기 비용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¹¹⁾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비가

10) 박현석(2016) p. 348에서 재인용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300억원 이상 공사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 2015. 12.29.

격요소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 3>에 제시되었는데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 시 반영하며,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 및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도 고려된다. 또한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대형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시 2점,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0.4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3> 종합심사낙찰제도 비가격요소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일반공사	고난이도공사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7점
		배치기술자	10점	11점
	역량	시공평가점수	15점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2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점	0.2점
		건설안전	0.2점	0.2점
		공정거래	0.2점	0.2점
		지역경제기여도	0.4점	0.4점
	소 계		50점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감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2015.12.29.

**가격요소의 경우
입찰금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격요소의 경우 입찰금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시에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고 나머지 가격의 산술평균을 취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단가 및 하도급계획을 심사하여 감점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출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하고 있다 (<표 4> 참조).

<표 4> 종합심사낙찰제도 가격요소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일반공사	고난이도공사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 계		50점	50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2015.12.29.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되는 이상치에 대한 규정은 입찰참여기업의 수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데, 입찰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한다. 또한 입찰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상위 40%와 하위 10%를, 10명 미만인 경우 상위 50%와 최하위 입찰금액 1개를 제외한다. 이렇게 균형가격이 산정되면 <표 5>의 산식을 통해 입찰금액 심사점수가 계산된다.

〈표 5〉 종합심사낙찰제도 입찰금액 평가 산식

구분	산식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sqrt{1-0.5\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text{균형가격}}\right)^2} \times \text{배점}$
투찰가격이 균형가격과 일치하는 경우	배점한도
투찰가격이 균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sqrt{1-\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text{균형가격}}\right)^2} \times \text{배점}$

출처: 한국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접속일자: 2017.11.16)

종합심사낙찰제도는 입찰자를 투찰가격 순으로 정렬한 후 비가격요소를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도와 달리 모든 입찰 참여자에 대해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가격요소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의 공공조달시장 공사계약 낙찰제도

가. 미국

미국의 조달규정은 연방조달규칙시스템(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ystem)의 제1장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규정되어 있다. 1980년대 이래 부패방지, 경쟁 촉진 등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운용해 왔던 미국은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FASA: Fedral Acquisition Streamliing Act)의 제정을 계기로 “최고가치(best value)”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¹²⁾ 현재 미국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낙찰제도는 크게 “교환(tradeoff)을 통한 최고가치 선정방식”과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가격(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LPTA) 방식”이 있으며, 두 제도 모두 기술요건 등 비가격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이다.

교환을 통한 최고가치 제도는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가중치 그리고 비가격 평가항목과 가격항목과의 교환 비율 등을 미리 공지한 후, 정해진 교환 비율하에서 기술과 가격을 가장 최적으로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즉, 최저가격을 투찰하였더라도, 다른 입찰자와 기술 격차가 매우 큰 경우 발주자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주지 않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종합심사낙찰제도는 모든 입찰 참여자에 대해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가격요소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지세현 외, 「국내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 미국, 영국,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11,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 pp. 367-372.

**영국 역시 공공조달공사에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술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더라도, 투찰가격이 매우 높아 가격 격차가 큰 경우 탈락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가격 제도는 사전에 공지된 기술요건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술요건 등의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발주자 내부의 견적전문가 등이 평가하여 판단하여¹³⁾ 공사별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는 순위나 점수를 매기지 않고 미리 정해진 기술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며,¹⁴⁾ 요건을 만족한 입찰 참여자 중에서는 최저가격을 투찰한 기업이 낙찰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가낙찰제도와 저가심의회가 결합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나. 영국

영국의 공공조달 관련 규정은 공공계약규칙(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공공조달공사에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1990년대까지의 공공조달정책은 공개경쟁입찰과 최저가낙찰제도가 핵심이었으나, 1999년 발표된 “Achieving Excellence” 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품질조합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¹⁵⁾ 영국의 낙찰기준은 “발주기관의 관점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MEAT)”과 “최저가격(the lowest price) 제도” 2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가격 제도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¹⁶⁾ 김성일 외(2016)에 의하면 약 95%의 공공계약에 MEAT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MEAT제도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가격, 품질, 기술적 장점, 미와 기능의 특징, 환경대책, 유지관리비, 비용의 효율성, 사후관리, 기술적 지원, 공시기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의 비중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가격 중시형 사업의 경우 가격비중이 70~90%, 품질 중시형 사업의 경우 40~60% 범위 내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예정가격 산정에는 발주기관 내부의 비용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각종 자원 거래가격 및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확성 및 신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¹⁷⁾

13) 김성일 외(2016) p. 139.

14) FAR 15.101-2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source selection process (<http://acqnotes.com/acqnote/careerfields/lowest-price-technically-acceptable-lpta>) (접속일자: 2017.11.9)

15) 송성훈(2012), p. 141.

16) 김성일 외(2016) p. 139.

17) 김성일 외(2016) p. 140.

다. 일본

일본은 건설공사에서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과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평가방식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⁸⁾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은 예정가격 제한범위 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종합평가낙찰방식은 예정가격 제한범위 내 입찰자 중 가격과 기술,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평가방식은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의 지나친 가격경쟁과 덤핑계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종합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평가낙찰방식은 국토교통성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 체에서도 시행이 확산되었으나, 지방지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최저제한가격제도 등 가격중심 낙찰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¹⁹⁾

일본은 건설공사에서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과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평가방식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다음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이 기업의 입찰 행태 및 낙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도가 적용되다가 종합심사낙찰제도로 대체되었는데 이러한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가낙찰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의 공사계약 내역, 공사계약 투찰업체 내역, 공사계약 구성업체 내역 등을 활용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전후인 2015년 1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공고된 공사계약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공사 중 2015년 1월에서 2016년 1월 사이에 공고된 공사계약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2016년 2월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분석 자료의 요약 통계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적용됨

18) 송성훈 외, 『건설사업 입찰 평가 및 심사제도 선진화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p. 154.
19) 송성훈 외(2012), p. 164.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 수가 줄고 낙찰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찰자 수는 46.28명에서 34.18명으로 줄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74.39%에서 80.44%로 상승하였다.

에 따라 입찰자 수가 줄고 낙찰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찰자 수는 46.28명에서 34.18명으로 줄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74.39%에서 80.44%로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입찰자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주요변수 요약 통계(2015. 1~2017. 3)

(단위: 억원, %, 개)

최저가낙찰제도(2015. 1~2016. 1), N=58					
구 분	평균	최솟값	최댓값	중앙값	표준편차
추정가격	585.26	300.68	1,764.95	467.44	325.51
예정가격	596.39	295.37	1,832.19	486.54	321.44
낙찰률	74.39	66.08	98.38	73.57	5.29
입찰 참여기업 수 ¹⁾	46.28	3.00	143.00	33.00	39.30

종합심사낙찰제도(2016. 2~2017. 3), N=40					
구 분	평균	최솟값	최댓값	중앙값	표준편차
추정가격	671.69	301.18	1,718.10	472.84	917.85
예정가격	707.81	301.29	1,855.85	518.32	414.78
낙찰률	80.44	72.13	90.79	80.56	3.83
입찰 참여기업 수	34.18	6.00	83.00	33.00	19.26

주: 1) 최저가낙찰제도 입찰 참여기업 수는 자료가 존재하는 46개의 공사만을 이용하여 계산
출처: 조달정보개발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비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반면 낙찰자의 경우에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율은 하락하고 중소기업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 낙찰자의 중소기업 비율은 44.4%였으나,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후 동 비율이 66.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 기술요건 등 비가격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항목을 설계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기술 요건 등에 대한 평가가 변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표 7〉 낙찰제도별 입찰 참여기업 특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

(단위: %, 개)

	최저가낙찰제도 (2015. 1~2016. 1)	종합심사낙찰제도 (2016. 2~2017. 3)
추정가격 300억~500억원 공사		
대기업 비율	7.5	7.4
중견기업 비율	14.9	14.6
중소기업 비율	77.7	78.0
공사 수	27	21
총 입찰 참여기업 수	1,464	879

출처: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8〉 낙찰제도별 낙찰자 특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

(단위: %, 개)

	최저가낙찰제도 (2015. 1~2016. 1)	종합심사낙찰제도 (2016. 2~2017. 3)
추정가격 300억~500억원 공사		
대기업 비율	18.5	14.3
중견기업 비율	37.0	19.1
중소기업 비율	44.4	66.7
공사 수	27	21

출처: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입찰자의 투찰률 분포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비가격요소 평가의 변별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가격요소 평가의 변별력이 높고, 만약 대기업이 비가격요소 평가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대기업의 평균 투찰가격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찰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가격요소 평가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비가격요소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최종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의 투찰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투찰금액이 상승하는 패턴은 관측되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했다(〈표 9〉 참조). 종합심사낙찰제도 적용 공사의 평균 투찰률은 대기업 81.9%, 중견기업 81.4%, 중소기업 80.9%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의 투찰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투찰금액이 상승하는 패턴은 관측되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했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의 투찰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 관측되던 기업 특성별 투찰행위의 차이는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낙찰제도별 투찰률 요약통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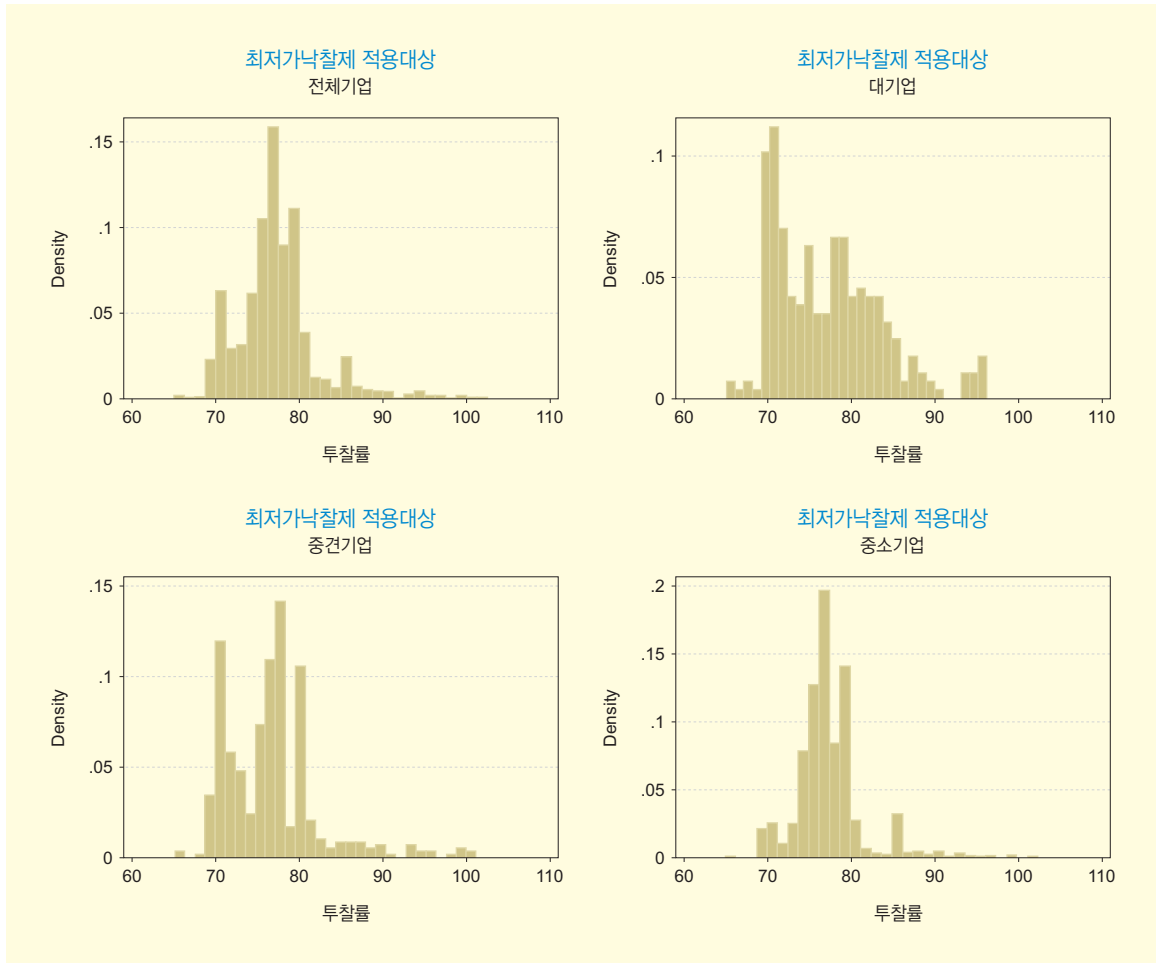
최저가낙찰제도 (2015. 1 ~ 2016. 1) N=2,129					
구 분	평균	최솟값	최댓값	중앙값	표준편차
대기업	77.2	65.1	96.3	76.5	6.4
중견기업	76.7	65.2	101.2	76.9	5.6
중소기업	77.4	65.0	102.3	76.9	4.0
전체기업	77.2	65.0	102.3	76.9	4.8
종합심사낙찰제도 (2016. 2 ~ 2017. 3) N=1,367					
구 분	평균	최솟값	최댓값	중앙값	표준편차
대기업	81.9	72.0	102.7	81.2	5.7
중견기업	81.4	72.1	102.7	81.0	5.0
중소기업	80.9	71.8	102.1	80.6	2.9
전체기업	81.2	71.8	102.7	80.7	4.1

출처: 조달정보개발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투찰률 분포를 살펴봐도([그림 1]과 [그림 2] 참조)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기업규모별 투찰행태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의 투찰률 분포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넓게 퍼진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패턴은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된 것으로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의 낙찰률 분포가 종합심사낙찰제도보다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도의 가격평가 방식이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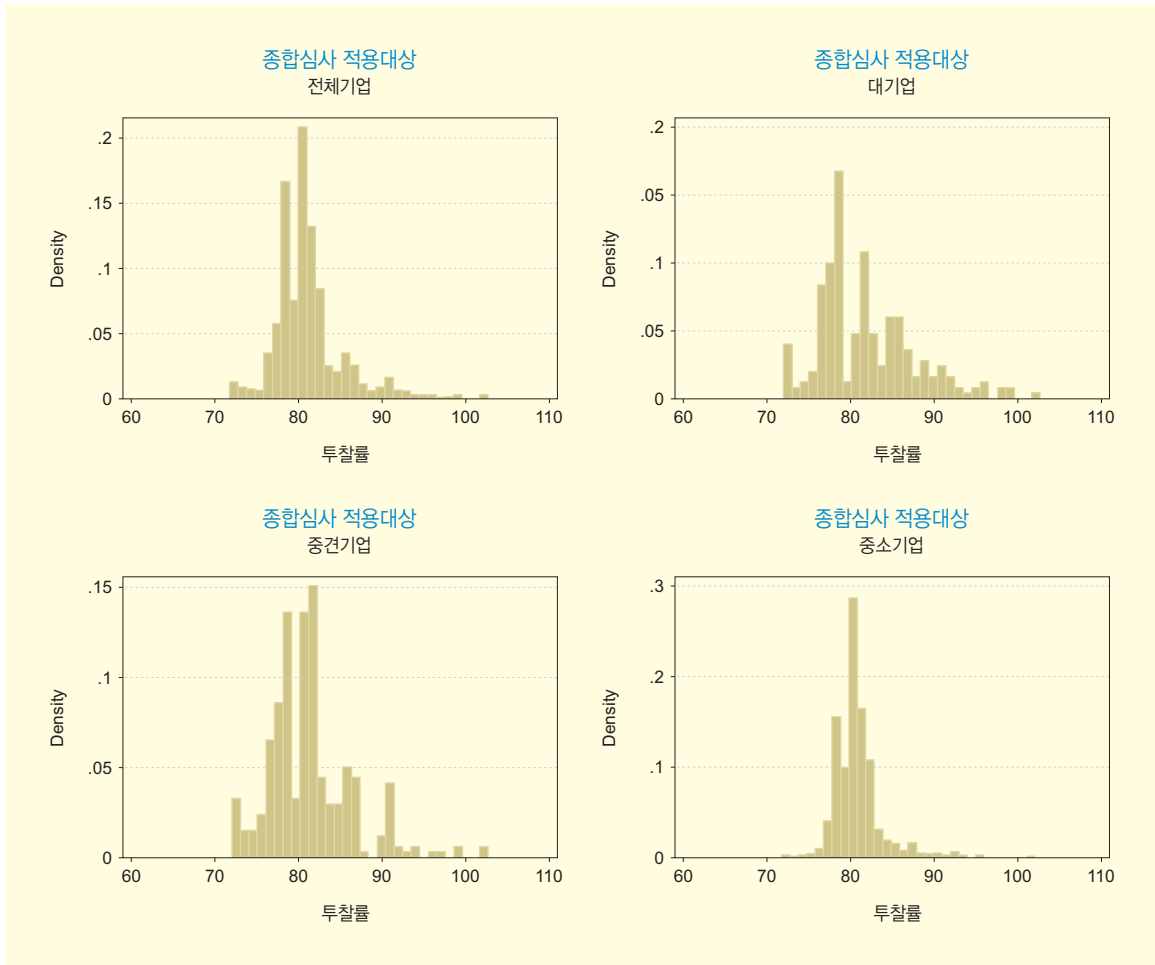
즉,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의 투찰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 관측되던 기업 특성별 투찰행위의 차이는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가격요소 평가의 변별력이 최저가낙찰제도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투찰률 분포: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300억원 이상 공사(2015~2016년)



출처: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투찰률 분포: 종합심사낙찰제도 적용 300억원 이상 공사(2016~2017년)



출처: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결과만을 근거로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비가격부문 평가의 변별력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비가격요소 평가의 변별력이 있지만 기업규모별로 유불리(有不利)가 없거나, 유불리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가격요소가 최종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보다 명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입찰자의 가격 및 비가격요소 평가결과 자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두 가지 간접적인 지표를 사용하

였다. 먼저 최저가격 투찰자(최저가낙찰제도 적용 공사)와 가격요소 최고점자(종합심사낙찰제도)의 낙찰확률을 비교하였고, 다음으로는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공사 낙찰자의 투찰가격(winner's bidding price)의 전체 입찰기업 투찰금액에서의 백분위율과 종합심사낙찰제도 적용 공사 낙찰자의 가격요소 점수 백분위율을 비교하였다. 백분위율의 경우 비교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도의 경우 가격요소 점수가 높을수록, 최저가낙찰제도의 경우 투찰한 가격이 낮을수록 더 작은 숫자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도 가격점수의 경우 직접 추정이 가능한 입찰금액 점수만으로 백분위율 및 낙찰확률을 계산하였다. 개별 입찰 참여기업의 입찰금액 점수는 이상치를 제거하고²⁰⁾ 남은 나머지 입찰금액을 바탕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한 후 <표 5>에 따라 계산하였다.

먼저 최저가격 투찰자 또는 가격요소 최고점자가 낙찰된 비율을 비교하였다. 즉 가격요소에서 가장 유리한 점수 또는 평가를 받은 기업이 비가격요소(저가십의 또는 비가격요소 평가)까지 고려한 후에도 최종적으로 낙찰될 확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가격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동 확률이 최저가낙찰제도에서는 23.9%,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는 22.5%로 계산되어 두 제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추정가격을 300억~500억원으로 제한하여 비교할 경우 종합심사낙찰제도 25.9%, 최저가낙찰제도 19.0%로 차이가 조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슷한 규모의 공사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도 적용 이후에 가격요소 최고점자의 최종 낙찰확률이 낮아져 비가격요소의 중요도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백분위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도 적용공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기업의 투찰가격은 하위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찰 참여기업이 100개라면 그 중 30번째로 낮은 가격을 투찰한 기업이 낙찰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도 적용공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격요소 점수가 100명 중 18번째로 높은 기업이 낙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요소 백분위율을 통해 살펴볼 때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 가격요소의 중요도가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사 규모를 추정가격 300억~500억원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간접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비가격요소 변별성이 높아졌다는 뚜렷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간접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비가격요소
변별성이 높아졌다는 뚜렷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 제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찰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상위 40%와 하위 20%를, 입찰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상위 40%와 하위 10%를, 10명 미만인 경우 상위 50%와 최하위 입찰금액 1개를 제외한 후 평균을 취해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제도 도입 이후 낙찰률은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입찰자 중 중소기업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낙찰자 중 중소기업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지표인 가격점수 최고점자의 낙찰확률은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낙찰자의 투찰가격 백분위를 비교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도하에서 낙찰자의 가격요소 점수가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의 가격요소 점수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가격요소 평가에서 “1등”인 기업의 낙찰확률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낙찰자의 가격요소 평가 평균 점수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즉, 가격요소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현상은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최저가낙찰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도 비가격요소 변별력 간접비교

(단위: %, 개)

최저가낙찰제도 (2015. 1~2016. 1)		종합심사낙찰제도 (2016. 2~2017. 3)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낙찰자의 투찰가격 백분위율	29.5	낙찰자의 가격점수 백분위율	18.3
최저가격 투찰자의 낙찰확률	23.9	가격점수 최고점자 낙찰확률	22.5
공사 수	46	공사 수	40
추정가격 300억~500억원 공사			
낙찰자의 투찰가격 백분위율	29.3	낙찰자의 가격점수 백분위율	18.3
최저가격 투찰자의 낙찰확률	25.9	가격점수 최고점자 낙찰확률	19.0
공사 수	27	공사 수	21

출처: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으로 살펴본 최저가낙찰제도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낙찰률은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찰자의 수가 감소하여 경쟁의 정도는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자 중 중소기업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낙찰자 중 중소기업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심사낙찰제도가 기술 요건 등 비가격요소 평가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비가격요소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평균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가격요소 평가방식이 적용되어 낙찰률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요소의 최고점자가 낙찰받을 확률(최저

가낙찰제도의 경우 최저가격 투찰자)은 최저가낙찰제도 적용 공사와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개선되었으나, 낙찰받은 기업의 가격요소 점수의 백분위율(최저가 낙찰제도의 경우 투찰가격의 백분위율)을 비교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가격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결과와 같이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다수의 입찰자가 고득점을 받는 경우, 기술요건 등 비가격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비가격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요건과 가격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는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체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가격요소 평가방식의 특성상 입찰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투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비가격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변별력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가격요소 평가방식을 입찰자 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최저가낙찰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종합심사낙찰제도의 경우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물 품질 향상 여부는 관리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최저가낙찰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격요소뿐 아니라 시공업체의 기술력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초기 건설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공사의 특성상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는 시설물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중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비가격요소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가격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이다.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함께 고려해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는 미국의 교환을 통한 최고가치 선정방식, 영국의 MEAT 제도, 일본의 종합평가낙찰방식 등 해외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분석결과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종합심사낙찰제도로 변경되면서 낙찰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 및 품질저하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비가격요소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낙찰기업의 가격요소 백분위율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격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까지는 비가격요소와 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술경쟁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가격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을 정확히 예측해 투찰하는 경우 최고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 가격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현 제도는 입찰 참여기업이 자신의 기술력 또는 자금 상황을 토대로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을 투찰하는 것이 아닌 기타 입찰 참여기업의 투찰가격과 비슷한 가격을 투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평가 방식과 더불어 비가격요소의 변별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시설물을 조달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비가격요소 부분이 변별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격요소 평가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외부의 공사견적 전문가들이 해당 공사의 특성, 투입자원 및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이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성일 외,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참가제한제도와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정부계약 네트워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0.
- 박현석, 『국가계약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 2016.
- 송상훈 외, 『건설사업 입찰 평가 및 심사제도 선진화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 장훈기, 『공공계약제도 해설』, 삼일출판사, 2016.
- 지세현 외, 「국내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 미국, 영국,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11,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 pp. 367-372.
- 최민수 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7-11

>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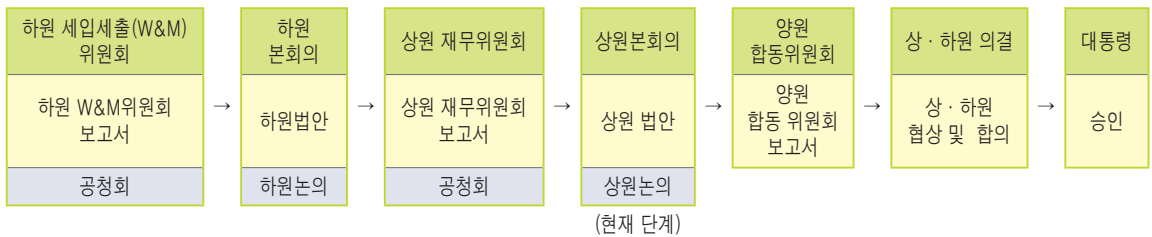
[미국-2017년 세법개정안 미 하원 및 상원 통과]

- 미 하원(House)은 2017년 11월 2일 세법개정안 ‘Tax Cut and Jobs Act’를 통과시켰으며, ¹⁾ 2017년 12월 1일 미 상원(Senate)은 하원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법안을 통과시켰²⁾
- 미 상원은 2017년 11월 17일 미 하원이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³⁾
- 상 · 하원의 개정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의원이 소개하며, ⁴⁾ 이번에 발표된 공화당 주도의 세법개정안은 상당부분에서 상 · 하원 간 이견이 존재함
- 상 · 하원 간 이견이 발생하는 법안에 대해 양원합동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의 법안 조정 및 양원 표결절차를 거쳐 2017년 연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 본 장은 미 하원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 미 하원과 상원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미 상원의 수정법안 내용을 추가로 기술함⁵⁾

〈표 1〉 미국의 세법개정 절차



1) 미 하원 조세합동위원회, https://waysandmeansforms.house.gov/uploadedfiles/tax_cuts_and_jobs_act_section_by_section_hr1.pdf, 접속일자: 2017년 11월 20일

2) KPMG, <https://home.kpmg.com/us/en/home/insights/2017/12/tnf-senate-passes-tax-reform-bill.html>, 접속일자: 2017년 12월 04일

3) 미 상원 재무부,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finance-committee-passes-historic-tax-overhaul>, 접속일자: 2017년 11월 20일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p. 49, 2009.

5) 미 상원의 개정안은 ‘Tax Cuts and Jobs Act Chairman’s Mark Section-by-Section Summary(<https://www.finance.senate.gov/taxreform>)’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미 상원에서 새로 제안한 개정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1.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다수의 공제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제시함
 - 개정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8년부터 시행되며, 미 상원은 미 하원이 발표한 소득세 개정안을 2025년까지만 적용할 것을 제안함

가. 개인소득세 구조 단순화 및 최저한세 폐지

- 미 하원은 현행 10~39.6%의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12, 25, 35, 39.6%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개정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 이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미 하원이 발표한 법안에서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는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계

속 유지함

- 반면, 미 상원은 미 하원과 달리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7단계로 유지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미 상원은 10, 12, 22, 24, 32, 35, 38.5%의 7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제안함
- 미 하원, 상원 모두 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고자 최저한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나. 각종 공제제도 개정

- 미 하원은 소득세 제도 단순화를 위해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ALD)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일부를 폐지하며, 인적공제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는 조정된 총소득(AGI)⁶⁾

〈표 2〉 미국의 소득세율 개정안

(단위: 달러, %)

현행 세율(2017년 기준)			미 하원 제안내용(2018년 기준)			미 상원 제안내용(2018년 기준)		
이상	이하	세율	이상	이하	세율	이상	이하	세율
0	9,325	10	0	90,000	12	0	9,525	10
9,326	37,950	15				9,526	38,700	12
37,951	91,900	25				38,701	60,000	23
91,901	191,650	28	90,001	260,000	25	60,001	170,000	25
191,651	416,700	33				170,001	200,000	32.5
416,701	418,400	35	260,001	1,000,000	35	200,001	500,000	35
418,401	-	39.6	1,000,001	-	39.6	500,001	-	38.5

6) 조정된 총소득은 각종 항목의 공제여부, 공제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미국 세법상 매우 중요함.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는 총소득에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액보다 큰 경우에 공제됨(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p. 306, 2009.)

을 산정하기 위해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임
(〈표 3〉 참조)

- 항목별 공제액은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표준공제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공제하는 항목임
- 인적공제제도는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4,050달러를 공제하는 제도임
- 미 하원이 폐지를 제안한 주요 공제항목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위자료 지급액, 의료비, 주·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액 공제가 있음(〈표 3〉 참조)
 - 이외에 폐지하는 공제항목으로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ALD) 중 교육비, 이사비용, 의료비 저축계좌 납입액 공제가 있음
 - 항목별 공제 폐지항목으로 재해손실, 세무신고 준비비용 공제가 있음
- 또한, 미 하원은 항목별 공제 항목 중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축소시키는 반면 현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하고,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할 것을 제안함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 100만달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대출금 50만달러에 대한 이자비용만 공제할 것을 제안함
 - 현금 기부금 공제는 기존에는 조정된 총소득(AGI)의 50%만큼 공제를 허용하던 것에서 AGI의 6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조정된 총소득이 261,500(단독

신고 기준)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만큼 항목별 공제액에서 차감하나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미 상원 또한 각종 공제제도 및 인적공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 하원과 달리 의료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의 공제항목은 계속 유지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폐지할 것을 제안함
 - 미 상원은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 항목 중 학자금대출이자, 의료비저축계좌 납입액, 위자료 지급액의 공제를 계속 허용할 것을 제안함
 - 항목별 공제의 경우 미 하원과 달리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는 폐지할 것을 제안함
- 미 하원은 각종 공제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표준공제액을 현행보다 약 2배 인상하며, 인적공제 폐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부양가족 세액공제(Family Tax Credit)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 표준공제액은 독신의 경우 현행 6,350달러에서 1만 2천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⁷⁾
 -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미 하원은 이를 1,6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 1인당 3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7) 홀벌이가구의 경우 현행 9,350달러에서 1만 8천달러로, 부부합산신고 시 현행 12,700달러에서 2만 4천달러로 인상함



■ 미 상원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미 하원보다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설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음

•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표 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총소득(Gross Income)	
(-)	총소득 공제항목 (Above the Line Deduction)	개인연금 납입액, 학자금대출이자(폐지, 하원), 의료비저축계좌(폐지, 하원), 이사비용(폐지, 상·하원), 자영업세의 50%,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 자영업자가 불입한 연금액, 정기예금 조기 해약 시 부과금, 위자료 지급액(폐지, 하원), 교사비용, 인정되는 학비
	총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액(Itemized Deduction) 중 큰 금액	*표준공제액: 6,350달러에서 12,500달러(독신 기준) *항목별공제액: 의료비(폐지, 하원), 주·지방정부 세금납부액(소득세 납부액 공제 허용 안함, 상·하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 (하원: 이자공제를 허용하는 대출금액 한도 감소, 상원: 폐지), 공익성 기부금(현금기부의 공제율 인상, 상·하원), 재해·도난 손실(폐지, 상·하원), 기타
(-)	인적공제(Exemption)	폐지
	과세소득(Taxable Income)	
(×)	세율	미하원: 12, 25, 35, 39.6% 미상원: 10, 12, 23, 25, 32.5, 35, 38.5%
	산출세액 (Income Tax)	
(-)	세액공제(Tax Credits)	자녀보육비 공제, 연로자 혹은 장애인 공제(폐지, 하원), 자녀 세액공제(공제액 인상, 하원: 1,600달러, 상원: 2,000달러), 교육비 세액공제(AOTC만 유지하고 나머지 폐지, 하원), 입양비 세액공제(폐지),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종합세액공제, 최저한세 세액공제, 저소득 세액공제, 초과납부 사회보장세
(+)	부담세액(Income Tax) 기타 소득세액(Other Tax)	
(-)	총부담세액(Total Tax)	
(-)	원천징수세액(Tax Withheld)	
(-)	추정납부세액(Estimated Payments)	
	납부세액(Amount you Owe)	

출처: 김영수, 『미국세법 2016』 참조하여 저자 수정

- 이외에 미 하원은 기존에 3개로 이원화된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⁸⁾ 한도를 감소시킬 것과 일부 세액공제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기존의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복잡하고,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며, 공제한도도 현행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감소시킬 것을 제안함
 - 또한, 기존의 세액공제 항목 중 경로자 및 장애인 세액공제, 입양비용 세액공제, 전기차 구입비용 세액공제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다. 도관회사 세부담 감소

- 미 하원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도관회사(pass-through) 소득에 최대 25%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사업소득은 정상사업소득(active business income)과 수동사업소득(passive business income)으로 구분하여,⁹⁾ 수동사업소득은 전액에 대해, 정상사업소득은 소득의 일부만 25%의 세율이 적용됨
 - 정상사업소득의 경우 순사업소득(net business income)의 30%¹⁰⁾ 또는 자본투자소득¹¹⁾만큼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함
 - 단, 법률, 회계, 컨설팅과 같은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는 규

정의 적용을 제외함

- 반면, 미 상원은 도관회사 소득의 23%만큼 소득공제할 것을 제안함
 - 도관회사 총임금지급액에서 각 파트너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총소득이 50만달러 미만인 경우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미 상원도 하원과 동일하게 법률, 회계, 컨설팅과 같은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라. 비과세소득 정비

- 미 하원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금액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함
 - 양도이전 5년 중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50만달러를 한도로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허용하던 것에서, 양도이전 8년 중 5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50만달러를 한도로 양도소득에 비과세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조정총소득이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비과세 한도금액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함

8) 기존에는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Hope Scholarship Credit(HSC), LLC(Lifetime Learning Credit), AOTC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중 HSC와 LLC는 폐지함. AOTC는 AOTC는 고등교육비용 지출액 중 2,000달러는 전액공제하고, 다음 2,000달러는 25%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9) 정상사업소득과 수동사업소득 구분은 미국세법 제 469조에 따르며, 납세자가 주기적, 지속적, 상당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10) 30%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자본소득 분배율(capital's share)로 정한 것임

11) 납세자가 파트너십 또는 S법인에 투자한 '자본투자금액(capital investments of the business)×[연방단기수익률(federal short-term rate)+7%]'으로 계산함



- 미 하원은 교육비 저축계좌인 'Corveldell Savings Account'에 대한 추가 납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Corveldell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교육비 지출 목적으로 인출 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였으나, 2018년부터 추가납입을 허용하지 않음
- 이외에 미 하원은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임대료, 어린이집 비용, 이사비용, 성과보상 명목으로 제공받은 선물가액(employee achievement awards)¹²⁾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고용주로부터 주택임대료 및 식사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기준에 비과세하던 것에서 5만달러를 한도로 과세할 것을 제안함

2. 법인소득세

가. 법인세율 인하

- 미 하원은 기존의 15~35%의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단일세율로 개정하고,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미 상원 또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안에 동의하였으나,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법인의 최저한세 폐지를 제안함

나. 각종 비과세 및 공제, 감면제도 개정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유형자산 구입비용의 전액

감가상각 허용, 2) 소규모사업자로 보는 소득기준 인상, 3) BEPS Action 4 권고사항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개정, 4) 이월결손금의 소급적용 규정 폐지, 5) 동종자산 교환 시 과세이연 규정 폐지, 6) 자본출연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7) 각종 공제제도 폐지 등이 있음

- 미 하원은 향후 5년간 적격 유형자산 구입 시 구입비용의 100%를 비용공제할 것을 제안함
 - 적격 유형자산은 동산이고, 내용연수가 20년 미만인 자산이며, 2017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자산이어야 함
 - 현행 규정에서는 각 자산별 내용연수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며, 적격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용의 50%만큼 추가 상각을 허용하고 있음

- 미 상원은 적격 유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에서 75% 이상 제작된 영화, TV프로그램, 라이브 공연과 같은 작품¹³⁾도 자산가액 전액 감가상각할 것을 제안함

- 미 하원은 소규모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총소득 5백만달러 이하에서 25백만달러 이하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소규모업자에 대해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허용하며,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12) 고용주는 선물 구입비용에 대해 종업원당 1,600달러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공제한도를 폐지함

13) 미국세법(IRC) §181(d)(e)에서 규정한 자산

- 반면 미 상원은 소규모사업자 기준을 미 하원과 달리 15백만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미 하원은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자비용이 조정된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큼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조정된 소득은 이자비용,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말함
 - 현행 규정에서는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고, 이자비용이 조정된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미공제된 이자비용금액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5년간 이월공제할 것을 제안함
- 반면 미 상원은 미 하원과 달리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미공제 이자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미 상원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 미 하원은 이월결손금의 소급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의 9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적용 2년, 이월공제 20년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90%를 한도로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예외규정을 두어 소규모기업, 농업, 재해로 인한 결손금 발생 시 결손금의 소급적용 1년을 허용함
- 반면, 미 상원은 소급적용 허용, 이월공제 기간, 이월결손금 한도, 시행시기에 있어 미 하원의 이월결손금 개정안과 차이가 존재함
 - 미 하원과 달리 농업에 한해 소급적용 1년을 허용하고, 이월공제는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며, 과세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미 하원은 2018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함 반면 미 상원은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함
- 미 하원은 2018년부터 동종의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 교환 시, 자본이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미 하원은 자본출연금(contribution to capital)은 과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주주가 아닌 자(non-shareholder)로부터 현금, 자산 등 자본출연금을 받는 경우와 자본출연금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제공받은 자본출연금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이는 각 주정부,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미 하원은 이외에 각종 공제제도 및 조세특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국내생산활동 소득공제, ¹⁴⁾ 고용창출 세액공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¹⁵⁾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 미공제 세액공제액 소급공제 등의 폐지를 제안함
 - 자본이득으로 소규모 기업 또는 파트너십의 지분 구입 시 자본이득에 과세이연하는 제도, 상용화되기 전의 특허권 거래 시 장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제도 등의 폐지를 제안함

다. 외국소득 및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정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 2) 누적된 해외소득에 12%의 세율로 일회성 과세, 3)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CFC 소득에 과세, 4)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 추가 제한, 5)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대금지급 시 소비세 과세제도 도입이 있음
- 1) 해외소득 과세제도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
 - 미 하원은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하여, 미국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이하 “배당소득 면제 제도”)할 것을 제안함
 - 미국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하 “CFC”)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현행 규정에서는 해외 자회사 소득을 미국에 배당형태로 지급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였으며, 이
 - 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
 - 미 하원은 CFC제도와 별개로 미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소득(high return amount) 중 50%는 미국주주의 지분율만큼 미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함
- 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 미 하원은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해외소득에는 일회성 과세하며, 현금은 12%의 세율로, 자산 및 설비에 재투자된 소득은 5%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함
 - 배당소득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해외 자회가 미국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임
 - 과세대상 소득은 1986년 이후부터 2017년 11월 2일 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과세되지 않은 세무상 배당가능 이익(earnings & profit)’ 중 큰 금액임
 - 일회성 과세로 납부하게 될 세액은 8년간 균등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균등납부 시 총납부세액의 12.5%만큼 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일회성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기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함
 - 미 상원도 그동안 누적된 해외소득에 일회성 과세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현금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함

¹⁴⁾ 국내생산활동 소득공제는 국내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의 9%를 임금지급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¹⁵⁾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신규 고용 시 첫 해 임금지급액의 40%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 이는 법인세를 인하여도 불구하고 저세율국에 해외자 회사를 설립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조세회피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임
 - 미국법인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미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순소득 합산금액’에서 ‘(해외자회사의 유형자산가액 합산금액 × 정상수익률(연방 단기수익률+7%)) - 해외자회사의 이자비용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임¹⁶⁾
 - 해외자회사 순소득 합산금액은 CFC제도에 의해 과세되는 수동소득(subpart F)은 제외함
 -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의 80%만 공제를 허용하며,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 반면 미 상원은 미 하원이 제안한 제도와 유사하게 해외자회사의 합산소득 중 일부(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를 과세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에 차이가 존재함
 -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자회사 순소득 합산금액’에서 ‘해외자회사 유형자산가액 합산금액 × 수익률 10%’를 차감한 금액에서 미국주주 지분율에 해당 하는 금액임
 - 또한, 미 상원은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 함
 - 미 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25%의 세율로 과세됨
- 미 하원은 미국 법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공제가 제한되는 금액은 ‘미국 법인의 이자수익+ 연결그룹 EBITDA의 110% 중 미국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임¹⁷⁾
 - Action 4 권고사항에 따른 이자비용공제 제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의 공제를 제한함
 - 이는 다국적기업이 해외계열사에 부채를 발행하여 미국에서 이자비용 공제를 과도하게 받는 것과, 배당소득면제제도를 통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미 하원은 미국 법인이 같은 다국적기업에 속한 해외 계열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20%의 세율로 소비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함
 - 과세대상 지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금액,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임
 - 즉, 연결그룹 간 원자재 구입거래,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20%의 소비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 있음¹⁸⁾
 - 수입금액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경조정세와 유사하나 연결그룹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¹⁹⁾

16) 해외자회사가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경우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더 커지게 됨

17) Thomson Reuters,

<https://tax.thomsonreuters.com/media-resources/news-media-resources/checkpoint-news/daily-newsstand/2017-tax-reform-proposed-foreign-income-foreign-persons-changes-in-the-tax-cuts-jobs-act/>, 접속일자: 2017년 11월 30일

18)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23060b2c-c037-11e7-9836-b25f8adaa111>, 접속일자: 2017년 11월 27일

19) Business Insider, <http://www.businessinsider.com/trump-gop-tax-plan-excise-tax-foreign-earnings-2017-11>, 접속일자: 2017년 11월 27일



- 미 상원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미국기업에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과 다국적기업 간 대금지급 시 소비세를 과세하는 개정안은 수정법안에 포함하지 않음

3. 상속·증여세

- 미 하원은 상속세 및 세대생략세 폐지 및 증여세 면세금액 인상과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안함
 - 상속세 및 세대생략세는 2024년부터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증여세의 기본공제(basic exemption) 금액을 현행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2배 인상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은 현행 40%에서 3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반면 미 상원은 상속·증여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개정안만 제안하였으며, 시행시기에 있어 미 하원의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
 - 미 상원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세대생략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은 계속 유지하며, 기본공제 금액만 인상하는 것임
 - 또한,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인상된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유럽

[덴마크-도관회사 주주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예규 발행]

- 덴마크 과세당국은 해외 도관회사(pass-through entities)의 주주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을 인정하는 예규해석을 2017년 11월 6일자로 발행함²⁰⁾
 - 영국 소재 투자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그 상위 주주에게 수익이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
- 본 예규의 주요 쟁점은 영국 소재 인가계약형 투자기구를 도관 또는 독립된 실체로 볼 것인지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것임
 - 덴마크 거주자 및 기타 투자자들은 영국에서 인가계약형기구(Authorized Contractual Scheme, ACS)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함
 - 동 ACS는 펀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증권, 파생상품, 예금,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함
 - ACS는 영국법상 도관으로 간주되어 영국에서 납세의무를 갖지 아니함
 - 본 사안의 쟁점은 ACS를 도관으로 볼 것인지, 또한 그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당사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임
- 덴마크 과세당국은 ACS를 도관으로 보아 그 상위 주주에게 소득이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
 - 동 ACS는 독립된 정관이나 계약체결 권한이 없

20)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1-10_dk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7년 11월 24일)

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덴마크 법령상 법적 실체로 간주되지 아니함

- 따라서 과세목적상 동 ACS는 도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ACS의 투자자들이 해당 투자기구의 자산 및 부채를 투자비율에 따라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에 따라, ACS의 투자 원천지국과 ACS 주주의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주주가 덴마크 거주자일 경우 덴마크와의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예시를 종합하면 독일 기업이 해외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이용권리 외에 소프트웨어를 수정, 배포, 출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로열티 지급액으로 보아 15.825%(부가세 5.5%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독일은 기업 간 거래(B2B)에서 '권리의 일시적 사용' 또는 '노하우 이전'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로열티 지급액으로 보아 독일에서 과세함
- 따라서, 독일기업이 해외법인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데이터서비스의 이용 외에 추가 개발, 이용권리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권리의 사용으로 보고 대금지급액을 로열티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독일-해외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과세에 대한 가이드 라인 발표]

- 독일은 2017년 11월 2일 독일 거주법인이 해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시 독일에 과세권이 존재하는지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²¹⁾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시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는 기업간(B2B) 거래 시 독일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음
 - 단,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이용 권리를 주는 경우'에 한해 독일에 과세권이 있는지 기술하고 있어, 그림 · 영상 · 게임 · 광고 등을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입 시 과세권이 독일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

21) EY, "Germany issues final guidance on classification of cross-border software and database use payments for withholding tax purposes," 2017.11.02.



〈표 4〉 독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상황	원천징수 여부	이유
1	독일법인이 해외 IT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사, 수정, 배포, 출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	소프트웨어의 단순사용 외의 권리가 주어짐
2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받고, 종업원이 사용 목적으로 5천개를 복사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문서작성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권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3	해외 모회사가 독일 자회사에 소프트웨어 권리를 주고, 추가 개발, 복사,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	○	소프트웨어 이용 외의 권리가 주어짐
4	해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유형 중 IaaS를 독일 자회사를 통해 독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독일 자회사가 고객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권리가 주어진 경우	○·×	IaaS이용료는 원천징수 안하며, 독일 자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비용은 원천징수
5	클라우드 컴퓨팅 중 SaaS(웹을 통해 메일, MS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유형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용자가 수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
6	독일은행이 외국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의도한 용도(사용목적)를 넘어서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
7	독일은행이 외국법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도 부여하는 경우	○	데이터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도 부여하기 때문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벨기에-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 승인

- 벨기에 재무부는 2017년 10월 2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향후 'Revival Act'에 포함되어 승인될 예정임²²⁾
 -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기 반을 높이고, 납세순위를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시행단계를 2단계(2018-19년까지 시행, 2020년부터 시행)로 나눠 발표하였으며, 2018-2019년에 시행할 개정안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주요 세법개정 방향의 내용²³⁾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음

- 세법개정안 초안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승인될 예정임

1. 2018년-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

-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9%로 인하함
 -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율도 3%에서 2%로 인하하며, 부가세율 합산 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33.99%에서 29.58%로 인하됨

22) Belgium—Corporate income tax reform: compensatory measures—PR and note published (31 Oct, 2017), News IBFD.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07호』, 2017.08.

-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10만유로까지는 20%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20%로 인상함
 - 현행 규정에서 벨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4.25~34.5%의 세율로 과세함²⁴⁾
 -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전액 소득공제하며, 해당 주식의 매매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0.412%로 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함
 - 법인이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최소 2.5백만유로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에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봄
 - 현행 규정에서는 배당받은 소득의 95%만 공제를 허용하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의 100%를 공제할 것을 제안함
 - 이월결손금, 경영참가소득 면제, 투자소득 공제, 이자비용 공제액에 대해 공제가능 한도를 규정하여 법인이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개정함
 - 공제허용금액은 1백만유로에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70%를 합산한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0%는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개업 후 첫 4년간은 비용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 미 신고 시 가산세를 인상하며, 지연납부 시 가산세율은 정부채권 이자율에 따라 결정함
 - 미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을 2018~2019년에는 3만 4천유로, 2020년에는 4만유로로 간주하여 과세함
 - 따라서, 2020년에 개정된 법인세율 25% 적용 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최대 1만유로가 부과됨
 - 지연납부 시 가산세율은 최소 4%에서 최대 10%의 범위에서 적용함
- ## 2.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
-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018년에 29%, 2020년에는 25%로 인하할 예정임
 - 법인세율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은 현행 3%에서 2018년 2%로 인하되며, 2020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임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1, ATAD 2) 모두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BEPS Action 2의 혼성불일치 규정, Action 3의 피지배외국법인(CFC) 과세제도, Action 4의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 등이 도입될 예정임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은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금액과 3백만달러 중 큰 금액의 공제를 제한함

24) 과세표준의 0~25,000유로까지는 24.25%, 25,000~90,000유로까지는 31%, 90,000~322,500유로까지는 34.5%의 세율이 적용됨



- 피지배외국법인(CFC) 과세제도의 경우 인위적 거래를 통해 해외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해 벨기에 주주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을 발표함
- 이외에 출국세 부과, 벨기에 고정사업장의 범위 Action 7에 따라 확대, 가속감가상각방법인 이중 채감법(double declining balance amortization)은 폐지할 것을 발표함
- 단,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 1’은 2019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회피방지지침 1’에 포함된 이자비용 공제제한규정, 출국세 규정 등은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여지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스웨덴-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수정]

- 스웨덴 과세당국은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에 대한 지침을 추가 수정하여 발표함²⁵⁾
 - 스웨덴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OECD의 추가확인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0월 19일 자료 관련 지침을 추가 보완함
-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수익의 구성 요소를 보다 명확히 제시함
 - 동 지침에서는 총수익 70억스웨덴크로나 이상의 다국적기업들이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수정 지침에서는 소수주주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

해서도 그것이 연결재무제표상에 같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총수익 계산 시 포함된다고 명시함

- 국가별보고서 작성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
 - 기본적으로 국가별보고서 작성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그룹을 의미함
 - 수정 지침에서는 해당 기업그룹 포함 여부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동 기업그룹에 포함되며 지분법 평가 대상 관계사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단, 원칙적으로는 연결 대상이지만 규모 또는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배제된 기업들은 국가별보고서 목적상으로는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됨

- 국가별보고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범위에 특별손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기본적으로 국가별보고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 중에는 기업 수익(revenue)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수정 지침에서는 수익의 범위에 특별손익(extraordinary income) 및 투자손익(profits on investment)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25) 스웨덴 국세청(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17.7/359881.html#update_20171019143400, 접속일자: 2017년 11월 24일)

[이탈리아-긴급 조세 조치 법령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0월 16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조세 관련 긴급조치 법령을 발표함²⁶⁾
 - 금번 긴급 조치 법령에는 광고투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인상, 조세채무 조정 절차,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조세유예 조치 등이 포함됨
 - 본 긴급조치 법령은 2017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됨
- 2017년 하반기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광고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 2017년 6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문, 간행지, 지역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에 게재하는 광고 투자금액이 2016년 동일 기간의 투자금액보다 1% 이상 많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75%의 투제세액공제를 허용함
 -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90%의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
- 현행 10%의 경감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19년에는 12%를 적용하기로 함
 - 현행 10%의 세율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11.4%로, 2019년 1월 1일부터는 12%로 인상함
 - 기존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의약품, 의료서비스, 여객운송, 전기, 가스, 도시폐기물 처리, 정화시설, 가축 및 어류, 재생에너지, 예술품, 문화공연, 부동산 임대 등이 있음

-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발생한 조세채무 중 조세징수기관에 위탁한 채무조정 첫 채무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2017년 발생한 조세채무의 조정절차 관련 일정을 입법함
 - 2000년부터 2016년부터 발생한 조세채무 중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조세징수기관에 위탁한 적격 채무에 대한 첫 상환 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7년 11월 30일로 연장함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조세징수 기관에 위탁한 조세채무 대해서는 2018년 5월 15일까지 조정합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 채무액과 상환일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고지하도록 함
- 2017년 리보르노 주(州)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피해 지역 납세자의 세금납부의무를 2018년 10월 16일로 연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핀란드-부동산세 세율 조정]

- 핀란드 국회는 2017년 11월 2일자로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개정안을 승인함²⁷⁾
 - 핀란드의 부동산세(real estate tax)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국내 부동산 과세표준가격에 연간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가치에 부동산 종류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세율을 적용하며,

26) Italy-Law Decree on urgent tax measures published (19 Oct. 2017), News IBFD.

27)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1-07_fi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7년 11월 24일)

핀란드 국세청(https://www.vero.fi/en/individuals/housing/real_estate_tax/, 접속일자: 2017년 11월 24일)



최종적인 세율은 관련 지방정부에서 결정함

- 이번 세율 개정안은 부동산세 적용을 위한 기본 세율 범위를 다소 조정한 것임
- 금번 개정 규정에 따라 장래 적용되는 부동산세 기본 적용 세율의 범위가 일부 상향 조정됨
 - 기존에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0.92%~1.8%, 상시 주거용(permanent residence) 부동산의 경우 0.41%~0.9% 범위의 세율이 적용됨
 -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부동산은 2018년부터 0.93%~2%, 상시주거용 부동산은 2019년부터 0.41%~1% 범위의 세율이 각각 적용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동 시행령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 기업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함
 - 마스터파일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사업활동의 내용 및 이전가격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로컬파일은 사업, 헝가리 납세자의 현황 및 사업 활동 내용, 관계사간 거래 내역, 이전가격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함
 - 이들 보고서 중 어느 한 종류만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는 없으며, 해당 문서를 반드시 헝가리어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헝가리-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

- 헝가리 국회는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0월 18일자로 승인, 공포함²⁸⁾
 - BEPS 프로젝트(Action Plan 13)의 후속 작업으로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의 작성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 도입에 따라 헝가리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이 전반적으로 OECD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동 시행령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문서에 대해 최초 적용될 예정임

> 아시아

[중국-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후강통) 소득세 면제제도 2년 연장]

- 중국 재정부는 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에 관한 개인소득세 면제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11월 16일 발표함²⁹⁾
 -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가 홍콩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함
- 2014년 11월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들이 후강통을 통해 취득한 홍콩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2014년

28)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252Fdata%252Ffns%252Fdocs%252Fhtml%252Ffns_hu_20171027_1148.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7년 11월 24일)

29) 재정부,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120171113_2748218.html, 접속일자: 2017년 11월 16일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음³⁰⁾

- 세계혜택이 2년간 지속해서 연장됨에 따라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들의 홍콩의 투자 유치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고 중국 본토의 위안화 국제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된다고 전망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법인세 15% 감면에 대한 통지 발표]

- 중국 정부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법인세 정책 전국 확대실시에 관한 통지를 11월 2일 발표함³¹⁾
 - 국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15% 감면됨
 - 기존 31개 시범도시에서 이미 인정한 2017년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계속 유효하며,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인정관리는 소재지 성에서 제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함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아웃소싱, 정보기술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아웃소싱,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아웃소싱 등임
 - 직원 교육비 지출금액은 임금총액의 8%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금액에서 공제되고, 초과분은 차기 과세연도에서 이월공제됨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반드시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 등록된 법인기업으로 [기술선진형 서

사업무 인정범위] 중의 한 가지 또는 다양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직원 50% 이상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 기업 당해연도 총수입의 50% 이상
-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 매출이 기업의 당해 과세연도 총매출의 35% 이상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영세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원 통지 발표]³²⁾

-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농가, 영세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 이자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발표함
 - 농가 및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금조달비용의 경감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수입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함
 - 소액대출은 건당 100만위안 이하의 대출이며,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월매출금액이 2~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게 동 조세지원 혜택이 부여됨

30)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80/c2912316/content.html>, 접속일자: 2017년 11월 16일

31) 재정부,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09_2746920.html, 접속일자: 2017년 11월 15일

32) 재정부,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06_2744300.html, 접속일자: 2017년 11월 16일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과 영세기업 등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인지세도 면제됨³³⁾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mises)이 과세대상 공급인지 매 거래시 매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0벌금단위(2017년 현재 210호주달러)가 부과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오세아니아

[호주-부동산 거래의 GST 납부방법 개선에 대한 초안 발표]³⁴⁾

- 호주 재무부는 부동산 거래시 매수자에게 GST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초안을 11월 6일 발표함
 - 본 법안에 따라 GST법을 개정하여 매수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거용 건물(residential premises) 및 거주 필지(residential subdivisions) 구매에 대한 GST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함
 - 현재는 GST가 부동산 구매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자가 GST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발자는 공사비에 대해 GST환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수정조항에 따라 부동산 개발자는 매수자에게 GST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³⁵⁾
 - 부동산 개발자는 주거용 건물(residential pre-

국제기구

[OECD-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10월 24일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³⁶⁾를 발표함³⁷⁾
 - 본 보고서는 국제거래에서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을 논의함
 - OECD의 “VAT/GST지침” 및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에서 상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관련 실행 패키지의 첫 보고서임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장으로 구성됨
 - 제1장에서는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의 과세지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정책

33)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80/c2897703/content.html>, 접속일자: 2017년 11월 16일

34) 호주 재무부, http://kmo.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109-2017/?utm_source=wysija&utm_medium=email&utm_campaign=Media+Release+%E2%80%93+Improving+the+integrity+of+GST+on+property+transactions, 접속일자: 2017년 11월 13일

35)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17-t220266/>, 접속일자: 2017년 11월 17일

36)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37) OECD(<http://www.oecd.org/tax/consumption/mechanisms-for-the-effective-collection-of-vat-gst.htm>), 접속일자: 2017년 11월 23일

적 질문과 정책 설계 관련 사항을 논의함

- 제2장에서는 과세지국에서의 공급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실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제도 설계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룸
- 제3장에서는 공급자의 등록 및 징수와 관련한 간소화제도의 설계와 실무적 운영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는 국가들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은 제시하지 않으나 정책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함

- 사업자 간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국으로 하되, 공급받는 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무형자산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함
-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로 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간소화제도 실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의 최소화, 온라인 등록 활용, 간소화된 전자신고 및 납부제도, 온라인 장부기록과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또한, 해외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등록에 대한 최소기준점(threshold)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한편, EU에서 도입한 해외 공급자의 온라인등록 제도의 운영성과를 감안하면, 본 보고서의 권고사

항 실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함

- EU는 Mini One Stop Shop(“MOSS”)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MOSS 징수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총 3십억유로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MOSS제도는 EU회원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편화 제도임³⁸⁾

– MOSS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MOSS 적용 대상 용역공급으로는 전기통신, 텔레비전과 라디오, 온라인 용역 등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8)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2013,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telecom/one-stop-shop-guidelines_en.pdf, 접속일자: 2017년 11월 29일)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의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2017. 10.25.)^{1) 2)}
 - 의회는 2018년도 EU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환원시키고 집행위 예산안 대비 일부를 증액하는 입장을 채택
 - (규모) 승인기준 1,626억유로, 지급기준 1,467억 유로를 편성

- (성장·고용) 연구, 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고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제고 정책에 예산을 지원
 - 청년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3억 6,670만유로(승인기준) 증액시켜 총 6억유로로 의결
 - 이사회 성장 및 일자리 분야 7억 5천만유로 삭감은 연구·혁신프로그램(Horizon 2020), 교통·통신·에너지인프라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과 같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제고 사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여 환원

〈표 1〉 2018년 EU 기구별 예산안 비교

(단위: 십억유로)

구분	집행위		이사회		의회	
	승인	지급	승인	지급	승인	지급
1. 스마트 ¹⁾ ·포용적 ²⁾ 성장	77.2	66.8	76.5	66.4		
1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21.8	20.1	21.1	19.9		
1b.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55.4	46.8	55.4	46.5		
2.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	59.6	56.4	59.3	56.1		
3. 안보 및 시민권	3.5	3.0	3.4	2.9		
4. 대외정책	9.6	9.0	9.5	8.9		
5. 행정비용	9.7	9.7	9.6	9.6		
소계	159.6	144.8	158.4	144.0		
특별기금	1.1	0.6	0.6	0.4		
합계	160.6	145.4	158.9	144.4	162.6	146.7

주: 1) 연구·혁신, 교육·훈련, 에너지·교통·통신망, 사회 정책 등
 2) 회원국 간 격차 해소, 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협력 발전 등
 출처: EU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1) EU 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71020IPR86551/eu-budget-2018-more-funds-needed-for-growth-jobs-security-and-climate-change>, 2017.10.25.
 2) 이사회 2018년 EU 예산안은 2017년 8월 재정동향 참고

- 교육훈련지원프로그램(Erasmus+), 연구·혁신프로그램(Horizon 2020), 중소기업경쟁력프로그램(COSME), 고용및사회혁신프로그램(EaSI)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제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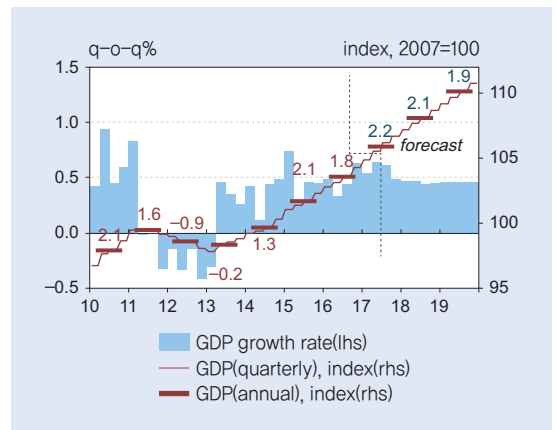
- (안보·이민) 안보, 이민 문제 해결이 유럽연합의 최우선순위인 데 반해 관련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유로폴(Europol), 망명·이민·통합기금(AMIF), 망명지원사무소(EASO) 등 예산을 증액
- (일정) 이사회가 의회의 수정안을 거부³⁾하여 현재 이사회·의회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21일간(10.31.~11.20.)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에 실패하면 집행위가 새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 2017 가을 경제전망 발표(2017. 11.12.)^{4) 5)}

- (경제) 유로지역 경제는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망기간 중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민간소비 회복, 세계 경제성장 개선, 실업 감소에 기인해 경제가 기존 봄(2월) 전망에 비해 크게 개선됨
 - 유로지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1.7%)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2.3%로 전망되며, 2018~2019년 성장률은 각각 2.1%, 1.9%로 전망됨

- EU의 2017년 경제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1.9%)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2.3%로 전망되며, 2018~2019년 성장률은 유로지역 성장률과 동일한 2.1%, 1.9%로 전망됨

[그림 1] 유로지역의 실질GDP 전망



주: 선분 위 숫자는 연간성장률을 의미
출처: EU 집행위원회, Autumn 2017 Economic Forecast, 2017.

- (물가)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및 비가공 식품 물가 하락과 유로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2018년 초에 소폭 하락했다가, 대체로 평탄할 것으로 보이는 유가와 양(+의) 산출갭 전망에 따라 2018년 말부터 다시 상승할 전망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1.5%로 전망되고, 2018년 1.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1.6%로 상승할 전망

3)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10/25/2018-eu-budget-council-cannot-accept-ep-amendments/>, 2017.10.25.
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news/autumn-2017-economic-forecast-2017-nov-09_en, 2017.11.12.
5) 본 전망은 EU 27개국과 영국의 교역 관계가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다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가정에 기반



- (노동) 내수 증가, 완만한 임금상승률 등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실업이 감소할 전망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7년 9.1%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8.5%, 7.9%로 더욱 하락할 전망
- (재정) 성장 강화에 힘입어 재정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GDP 상향 전망과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힘입어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⁶⁾도 감소해 채무도 감소할 전망
 -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재정 적자는 2017~2019년 1.1%, 0.9%, 0.8%로 개선되고 GDP 대비 채무도 동 기간 89.3%, 87.2%, 85.2%로 감소할 전망
- (리스크) 전반적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적임
 - 하방 리스크는 한반도·중동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세계 금융 여건 경색, 중국의 무질서한 경제조정, 보호무역주의 정책 확대 가능성 등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하며, 브렉시트 협상 결과, 유로화 절상 가능성 등 대내 요인도 작용
 - 상방 리스크는 EU 내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소비자·기업경기심리개선, EMU의 빠른 완성, 그동안 정체된 기업 투자 반등 등 대내 요인에 주로 의존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OECD

- OECD, *OECD Budget Transparency Toolkit* 발표(2017.10.26.)⁷⁾
 - 동 보고서에서 예산 및 재정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기관(IMF, OECD, World Bank,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등)들의 국제 표준 지침들을 소개함
 - 각 지침들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여 사용자가 목적에 맞는 지침을 선택하는 데 기여
 - 또한 OECD가 개발한 구조를 활용해 다섯 가지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예산 투명성 관련 다양한 지침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
 - 각 주제별로 관련 이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방향과 해당되는 국제 지침의 리스트를 소개

6) 채무 동학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GDP 대비 총채무를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저장-유량 조정(stock-flow adjustment)으로 분해하여 분석, 눈덩이 효과는 누적된 채무로 인한 이자지출 효과, 실질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고, 저장-유량 조정은 현금-발생주의 차이, 금융자산 누적 및 가치 변동, 다른 잔여 효과를 반영. EU 집행위원회, *Autumn 2017 Economic Forecast*, 2017, table I.1.

7) 출처: OECD, *OECD Budget Transparency Toolkit : Practical Steps for Supporting Openness,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2017. <http://www.oecd.org/gov/oecd-budget-transparency-toolkit-9789264282070-en.htm>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

〈표 2〉 예산 투명성 관련 주요 분야별 주제

분야	주제	
행정부	A. 연간 예산 주기 동안 유용한 예산 문서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전략을 설정하는 사전 예산서 행정부의 예산안 의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승인 예산 추경 예산 사전적 집행 예산 개요 또는 현금 흐름 전망 연중 예산 집행 보고서 반기 집행 보고서 결산보고서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재정 리스크 보고서
	B. 예산 문서에 적절한 재정 정보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범위(중앙정부, 일반정부, 공공부문) 예산 정보의 질/신뢰성/비교가능성 정보의 종합성 정책 우선순위와 연계된 예산 정보
의회	C. 의회의 참여·감시를 통한 혜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의 위원회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사전적 참여 의회의 예산 승인 예산 집행 및 실적에 대한 의회의 감시
	D. 의회 역량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내 전문적 분석 및 연구기관 의원들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CPD)
독립적 감사·통제 기관	E. 공공자금 관리 및 내부 통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금 관리의 표준 및 절차 내부 감사 절차
	F. 최고 감사기구의 역할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감사기구 설립의 핵심 원칙 및 거버넌스 결산 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 보고서
	G. 독립적 재정기관의 효과적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상황에 맞는 독립적 재정기관의 설계 예산 관련 의사결정의 질 제고를 위한 독립적 재정기관의 업무 및 기능 선정
시민 사회	H. 국민의 예산정보 접근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수단을 통한 주요 예산 정보 제시 주민참여 예산(citizen's budget) 발표
	I.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형 데이터(open data)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데이터의 형식 및 특성에 대한 기준 충족 개방형 예산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개방형 예산 데이터의 포털 사이트와 기존 포털 사이트를 통합
	J.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예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주기 동안의 참여 기회 제고 국민이 예산 편성, 결과 및 영향에 대한 개요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대중 참여 필요 참여 프로세스 설계



〈표 2〉의 계속

분야	주제	
민간 부문	K. 공공조달계약 공개	1. 공공조달 주기 전반 공개 2.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3. 실제적·효과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고
	L. 부존 자원의 수입 및 지출 설명	1. 예산 문서에 공공 자원 발굴 분야 반영 2. 자금의 사용·관리 방법 보고 3. 부존 자원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M. 인프라 투자의 부패 방지, 예산 가치 극대화 및 투명성 제고	1. 프로젝트 조달의 각 단계별 부패 요인 설명 2. 인프라 자산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산 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3. 조달·인프라 프로젝트의 관련 자료 사전 공개

출처: OECD Budget Transparency Toolkit(OECD, 2017)의 내용을 토대로 표 작성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미국

- 미 의회, FY2018 예산결의안(H.Con.Res.71) 최종 확정(2017.10.26.)⁸⁾
 - 올해 7월 21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의된 FY2018 예산결의안은 상원(51:49)의 수정안(Senate Amendments)을 거친 후, 하원(216:212)에서 최종 확정됨
 - 4조달러 규모의 대통령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인 감세법안⁹⁾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이미 시작된 2018회계연도(2017.10~2018.9)의 예산은 현재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12월 8일 만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FY2018 정규예산안(H.R.3354)은 하원만 통과한 상태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일본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임금·가처분 소득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확대 논의(2017.10.26.)¹⁰⁾
 -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노사교섭에서 3% 임금인상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과 세제,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총 동원해 적극적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이 쉽게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안을 검토
 - 임금 및 설비투자의 성장이 완만한 요인으로 기업이 일본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중장기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를 단행하지 않는 진단 존재
- ☞ 이는 과거 오랜 경기침체에서 나온 경영행동으로 위험 회피적이고, 내부유보를 많이

8)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chairman-cliane-black-praises-passage-budget-congress/>

9)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고: 「미국-2017 세법개정안」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미국-2017-세법개정안-발표/525128

10) 내각부,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7/1026/interview.html>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important/koujunkan.html>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7/1026/shiryu_06.pdf

확보하겠다는 성향 때문

- 정부는 임금인상 및 투자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노동생산성 상승, 인재육성과 투자환경의 정비 등을 제안

〈임금인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 ☞ 노동시장 개혁 ·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유연 근무 확대, 정규직의 해고 규제완화, 경력수당 확충, 동일노동 · 동일임금의 추진, 보육 대기아동 해소에 따른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 인적자본 형성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 ☞ 인재투자 기업의 세제지원, 구인에 대한 기업의 요구 파악
- 노사협상, 최저임금 인상, 간호 · 간병 보수 개정을 통한 임금인상
-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 세제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촉진, 기업이 내부유보금 활용 시 인센티브 설계
- 규제완화, 경제특구의 활용(대일 직접투자 촉진),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개발의 연계 추진 등 투자환경의 정비

- 외국의 고급인력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인재육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전문연구원)

 독일

- 연방 재무부, 제 152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17.11.9.)¹¹⁾

*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¹²⁾들의 독립적인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통상 5월, 11월에 결과를 발표

- (세입) 최근 수년간의 강건한 내수 및 고용으로 인한 임금인상이 지속되어 총세입은 2017년 약 7,342억유로에서 2022년 8,896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월 추계 대비) 2017년 총세입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지난 5월 추계(7,324억유로) 대비 18억유로 증가한 7,342억유로로 추계¹³⁾
- 2018년~2021년 총세입 또한 지난 5월 추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Bund-Länder-Finanzbeziehungen)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¹⁴⁾되어 주정부(157억유로), 기초자치단체(120억유로)의 세수 증가가 예상

11) 연방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7.11.9.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7/11/2017-11-09-pm-steuerschaetzung.html>

12) 연방 재무부는 독립적인 '세수추계 작업반'의 추계를 기초로 검토 작업을 행하며, 연방 재무부 외에 연방경제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독일경제연구소, 뮌헨대학 경제연구소, 쾰른대학 세계경제연구소, 할레 경제연구소,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로 구성(출처: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독일의 재정제도』, 2011.)

13) 독일의 세수추계 과정과 '17년 첫 번째 세수추계(5월) 결과는 2017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p. 111 참고

14) 2020년부터 독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약 97억유로의 세금공제 혜택 받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조세행정 또는 교육투자 등에 통제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Bund-Länder-Finanzbeziehungen) 법안이 2017년 6월 1일에 통과(출처: 연방내각, 2017)



〈표 3〉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방정부	2,890 (2.6)	3,083 (6.7)	3,158 (2.4)	3,287 (4.1)	3,353 (2.0)	3,484 (3.9)	3,607 (3.5)
주정부	2,887	2,981	3,068	3,162	3,324	3,454	3,587
기초자치단체	988	1,054	1,095	1,132	1,216	1,265	1,313
EU ²⁾	293	224	322	370	372	376	389
총세입	7,058 (4.8)	7,342 (4.0)	7,643 (4.1)	7,951 (4.0)	8,265 (4.0)	8,579 (3.8)	8,896 (3.7)

주: 1)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18~2022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연방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7.11.9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영국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인플레이션 보고서(Inflation Report November 2017) 발표 (2017.11.2.)¹⁵⁾
 -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는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
 - 현재 0.25%¹⁶⁾로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0.5%로 인상
 - 다만, 4천 350억파운드 규모의 국채 매입과 100억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매입 등 양적 완화 한도는 동결
 -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EU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 2017년 4분기 물가상승률이 3.0%로 높아져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 전망
- EU 탈퇴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였으며,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 영국 경제는 당분간 저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4%대로 하락하여 안정화 될 전망
 - 글로벌 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의 국내 경제 활동 속도는 둔화됨에 따라 2017년, 2018년 모두 1.6%의 저조한 GDP 성장률이 전망
 -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실업률 하락으로 향후 전망치 또한 8월 대비 하향조정

15) 영국 중앙은행,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inflationreport/2017/nov.pdf>

16) 2016년 8월 영국은행은 브렉시트에 대응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0.25%p 인하하고, 국채 자산매입 규모를 600억파운드 확대해 4,350억파운드로 상향조정함(2016년 8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표 4〉 주요 경제전망

(단위: %)

	2017	2018	2019	2020
실질GDP 성장률 ²⁾	1.6 (1.7)	1.6 (1.6)	1.7 (1.8)	1.7
	2017Q4	2018Q4	2019Q4	2020Q4
실질GDP 성장률	1.5 (1.3)	1.7 (1.8)	1.7 (1.7)	1.7
물가상승률(CPI)	3.0 (2.8)	2.4 (2.5)	2.2 (2.2)	2.1
실업률(LFS)	4.2 (4.4)	4.2 (4.5)	4.2 (4.5)	4.3
기준금리 ³⁾	0.4 (0.3)	0.7 (0.5)	0.9 (0.7)	1.0

주: 1) 괄호 안은 *Inflation Report August 2017* 상의 전망치

2) 1월~12월 기준

3) The path for Bank Rate implied by forward market interest rates. The curves are based on overnight index swap rates.

출처: 영국은행, *Inflation Report November 2017*, Table 5.A & Table 5.F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소영 연구원〉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 하원 상정(2017.10.26.)¹⁷⁾
 -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은 약 48.9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44.9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약 4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의결지출) FY2017 예산안에서 발표된 혁신 촉진, 원주민에 대한 기회창출, 의료서비스 강화, 국민건강 증진 등의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의결지출 10억캐나다달러를 포함한 44.9억캐나다달러를 편성
 - ☞ 의결지출에는 국방 관련 선박 및 장비에 대

- 한 자금 지원, 원주민 권리 해결, 급여 조정 및 국제위기 대응 등이 포함
 - ☞ 공공기관 급여 조정관련 약 6.5억캐나다달러, 이전에 승인된 국방부의 19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약 3.4억캐나다달러, 캐나다 군인 임금 인상에 대한 자금지원 약 3.3억캐나다달러 등
 - (법정지출) 법정지출은 입법화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출로 추경예산안에서는 정보 목적으로 법정지출 전망치를 제공

17)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https://www.canada.ca/content/dam/tbs-sct/services/planned-government-spending/supplementary-estimates/supplementary-estimates-b-2017-18/supplementary-estimates-b-2017-18.pdf>



〈표 5〉 FY2017-18 추경예산안(B)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 분		일반 예산 (Budgetary)	투융자 예산 (Non-Budgetary)
추경(A)	의결지출 (Voted Appropriations)	4,487	0
	법정지출 (Statutory Expenditures)	395	0
	합계	4,885	0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B) Table 2, 2017.10.

- 재무부, 중산층 강화를 위한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7 No. 2 발표(2017.10.27.)¹⁸⁾
 - 재무부 장관은 2017년 예산안의 조치들을 입법화하여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법안을 발표
 - 이번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 등이 포함

2. 기타

-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7 발표(2017.10.31.)¹⁹⁾
 -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1.9%, 2019년 1.8%로 점차 둔화될 것이며, 재정적자는 FY2017-18 202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년에는 99억캐나다달러까지 감소할 전망
 - (경제전망) 캐나다 경제는 2017년 상반기에는 강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부터는 차입금리가

- 상승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 지출 증가가 둔화되고 주택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1.9%, 2019년 1.8%로 점차 둔화될 것이며, 명목GDP는 2017-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4.1% 성장할 전망
- (재정전망) 재정 적자는 FY2017-18 20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9%)에서 FY2022-23년에는 9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4%)까지 감소할 전망
 - ☞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FY2017-18에는 30.5%, FY2018-19에는 30.1%로 전망되며, FY2020-21에는 29.0%로 2016년 예산에서 발표한 GDP 대비 연방채무 목표(FY2020-21에 31% 이하로 감소)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낼 전망

18) 캐나다 재무부, <http://www.fin.gc.ca/n17/17-105-eng.asp>

19)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pbo-dpb.gc.ca/web/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7/EFO%20Oct%202017/EFO_OCT2017-EN_Final.pdf

〈표 6〉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2017	2018	2019	2020-2022
실질GDP 성장률	3.1	1.9	1.8	1.7
GDP 인플레이션	2.4	1.8	2.0	2.1
명목GDP(십억캐나다달러)	2,140	2,221	2,306	2,487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7*, Summary Figure 1, 2017.10.

〈표 7〉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6-2017	Projection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총세입	293.5	308.2	323.2	335.1	349.1	363.2	377.8
총세출	311.3	328.4	338.6	349.3	362.6	375.8	387.7
프로그램지출	287.2	304.4	311.1	318.1	328.6	339.3	349.2
이자지출	24.1	24.0	27.5	31.2	34.0	36.5	38.5
재정수지	-17.8	-20.2	-15.5	-14.2	-13.6	-12.5	-9.9
연방채무(GDP 대비 %)	31.2	30.5	30.1	29.6	29.0	28.5	27.8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7*, Summary Figure 2, 2017.10.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전문연구원)

프랑스

- 2017년 1차 추경예산안 발표(PLFR1: premie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7) (2017.11.2)²⁰⁾
 - (경제전망) 2017년 경제성장률은 1.7%로 2018년 예산안의 전망치와 동일
 - 프랑스 통계청(INSEE)은 10월 전망에서 1.8%, Consensus Forecasts에 의해 조사된 경제학자들은 1.7%, IMF는 10월에 발표된 세계 경제

- (재정전망) 2017년 추경예산안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목표는 2018년 예산안의 2017년 수정전망과 동일한 2.9%로 유지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본예산대비 76억유로 증가한 769억유로로 전망
 - (지출) 재정지출은 3,848억유로로 본예산 대비 32억유로 증가

²⁰⁾ 예산국(Direction du Budget, DB),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7/publication-premier-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7#.WfuteE0UmUk>



- (수입) 재정수입은 3,027억유로로 본예산 대비 42억유로 감소

역유로 이상인 기업의 추가 기여금도 15%(총 30%)로 할 예정이며 50억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전망

〈표 8〉 FY2017 추경예산안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전문연구원)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7 본예산(A)	2017 1차 추경예산안(B)	B-A
총지출	381.6	384.8	3.2
총수입	306.9	302.7	-4.2
조세수입	292.3	289.6	-2.7
세외수입	14.5	13.0	-1.5
특별회계	5.4	5.2	-0.2
재정수지	-69.3	-76.9	-7.6

출처: PLFR1 2017



호주

- 호주 정부, 에너지보증위원회(Energy Security Board) 권고에 따라 국가 에너지 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NEG) 정책 발표(2017.10.17.)²¹⁾
 - 국가에너지보장(NEG) 정책은 에너지 규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배출가스 감축 두 개의 파트로 구성
 - A Reliability Guarantee: 각 주에서 석유, 가스, 수력 등 일정 수준의 급송 자원(dispatchable sources)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함
 - An Emissions Guarantee: 국제협약 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감축 목표 준수
 - NEG 시행은 에너지안정성과 탄소배출 목표가 동시에 에너지가격에 반영되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전기부문 보조금이나 세금 없이 배출가스를 감축시키고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
 - 투자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보증위원회(Energy Security Board)에 따르면 2020-2030년 동안 연평균 가구당 110~115호주달러 절약이 가능

- (주요정책) 프랑스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3%로 과세^{21) 22)}한 금액을 환급, 2017.12.31.~2018.12.30. 동안 대기업에 매출액 기준으로 추가 기여금을 부과
 - 2017년 10월 6일 헌법재판소는 모회사가 배분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의 3% 추가 세율로 과세한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며 2018년 50억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
 - 이러한 세금 환급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2017년 추경예산안에서 기업의 추가 기여금 도입
 - 매출액이 10억유로 이상인 기업의 추가 기여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의 15%, 매출액이 30

21) 2012년 8월 16일에 발표한 2012년 수정예산법안 제6조에 명시

22) 2017년 5월 17일 유럽연합재판소(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CJUE)는 프랑스 국가평의회(Conseil d'État)에게 위 조항이 각 회원국의 모회사 및 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체계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1/96/UE)에 위배된다고 판결

23) 호주 총리 홈페이지, <https://www.pm.gov.au/media/national-energy-guarantee-deliver-affordable-reliable-electricity>

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재무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FinTech Regulatory Sandbox)²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초안 공개(2017.10.24.)²⁵⁾
 - 호주 정부는 엔젤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칭함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정부 입법 프레임 하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 24개월 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도록 함
 - 연금, 생명보험, 국내의 증권 등의 금융 자본
 - 소비자 신용 발행·촉진
 - 비현금 결제수단
 - 크라우드 펀드 서비스 등이 해당
 - 신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업의 초기 규제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핀테크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
 - 또한 기업의 새로운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전문연구원〉

24) 샌드박스란 본래 가정집 뒤뜰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모래 공간을 의미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모래사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가시성을 시험하기 위한 대응책임(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규제 샌드박스 정책동향 및 시사점』)

25) 출처: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17-1230052/>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11.10.~12.9. 세미나 등: 12.1.~12.31.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2017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12. 14.(목)~12. 15.(금) •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 • 주제: 지속가능 사회와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 발표: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Delphine Moretti(OECD) 외 • 토론: 박노옥 재정성과평가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한국재정정보원	17-12-14 ~12-15
<p>■ 한국연금학회-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개인연금 공동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12. 14.(목) 14:30~16:50 • 장소: 금융투자교육원 강의실(501) • 주제: 개인연금의 세제효과 • 발표: 박종상 교수(숙명여대) 외 • 토론: 정희수 연구위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승훈 교수(대구대) 	한국연금학회	17-12-14
<p>■ 가상화폐 과세 관련 쟁점 및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12. 4.(월) 15:00~17: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발표: 신상화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17-12-04
<p>■ 부동산세제, 어디로 가야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12. 1.(금) 15: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발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 토론: 고종완 원장(한국자산관리연구원), 노희천 교수(숭실대) 외 	한국납세자연합회	17-12-01
<p>■ 제12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12. 1.(금) 14:00~18:00 •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주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 • 발표: 류덕현(중앙대) 외 • 토론: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외 	한국재정학회	17-12-01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예산안이 1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 *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0.5조원 포함 •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기획재정부	17-12-06
<p>◇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최근 3년 동안의 업종트렌드(유행)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11월부터 기존의 40개 생활밀접업종 통계를 「100대 생활업종 통계」로 확대하여 새롭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와 취업희망자를 비롯하여 생활업종에 관련된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00대 업종 통계를 근거로 최근 3년(2014~17)간의 업종 트렌드(유행)도 분석 	국세청	17-11-29
<p>◇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개최: 김동연 부총리,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주제 발표-향후 정기적으로 혁신성장의 성과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최초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위원회 인사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는 혁신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를 공유하면서 각 부처의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개최 	기획재정부	17-11-28
<p>◇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안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1.1.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 • 이에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 간담회 및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17-11-28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평가와 과제 / 고영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안)」을 발표함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과 고용유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민주연구원	17-12-05
<p>◇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문은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정부주도형 복지정책에서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큰 흐름 중의 한 과정에 있는 법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스스로의 일자리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17-12-01
<p>◇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 임동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위헌 소지도 있음.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세수가 469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었음. 	한국경제연구원	17-11-27
<p>◇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 이태석, 허진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중기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의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17-11-27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Improving the Tax Cuts and Jobs Act: A Path for the Conference Committee / by Adam N. Mich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House and Senate each passed different version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The two versions now head to a conference committee where select lawmakers from both chambers will work towards one unified bill. The conference committee should begin with the Senate-passed bill. The Senate bill is on the whole an improvement on the House-passed version, and the political balance struck in the Senate will be important to maintain for final passage. ... (후략) 	Heritage Foundation	17-12-06
<p>◇ Wealthier, Happier and More Self-Sufficient: When Anti-Poverty Programs Improve Economic and Subjective Wellbeing at a Reduced Cost to Taxpayers / by Titus J. Galama, Robson Morgan, Juan E. Saavedr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document how an anti-poverty program improves economic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sufficiency. Familias en Accion Urbano, a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implemented at scale in the country of Colombia, uses a means-test cutoff score selection rule that provides exogenous variation in program participation. ... (후략) 	NBER	17-12-04
<p>◇ How the GOP Tax Bill Will Affect the Economy / by Parker Sheppard and David Burt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House passed its version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on November 16, a bill that would reform the tax code by lowering marginal rates for most households, corporations, and small businesses.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reported its version of the bill out of committee on November 16, and the full Senate is expected to take up the bill in the week of November 27. ... (후략) 	Heritage Foundation	17-11-28
<p>◇ Fiscal Federalism and Regional Performance / by Gabriel Di Bella, Oksana Dynnikova, and Francesco Grigol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nd regional policies are essential for balanced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The interaction of federal and regional policies with cross-regional structural differences aspect human and physical capital formation, the business climate, private investment, market depth, and competi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elements of Russia's fiscal federalism, describes the channels through which it operates, and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transfers in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 (후략) 	IMF	17-11-22

정책 흐름



-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 10월말 관리재정수지, 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개선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7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와 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 2018년 예산안이 1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Delta 0.1$ 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Delta 0.7$ 조원 감소*
 - *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Delta 0.5$ 조원 포함
- ◇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단위: 억원)

투자 확충 중점	핵심 증액	증액
경제활력 제고	•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12,757
	• 산업단지·경자구역 기반조성	+393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11
	• 영유아보육료 지원	+912
국민 안전 확보	• 중증외상센터 지원	+212
	• 지진대비 지원 확대	+1,279
	•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	+377

- ◇ 정부는 12.8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1. 재정총량

①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소폭 증가, 총지출은 소폭 감소

-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한 447.2조원
- 총지출은 정부안(429.0조원) 대비 $\Delta 0.1$ 조원 감소(감액 $\Delta 4.3$ 조원, 증액 4.2조원)한 428.8조원

②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관리재정수지는 $\Delta 28.5$ 조원(GDP대비 $\Delta 1.6\%$)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Delta 0.7$ 조원 감소

(단위: 조원, %)

	'17년		'18년		증 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전년대비(C-A)	%
• 총 수입	414.3	423.1	447.1	447.2	0.1	32.9	7.9
• 총 지출	400.5	410.1	429.0	428.8	△0.1	28.3	7.1
•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28.5	0.1	△0.2	
(GDP대비, %)	(△1.7)	(△1.7)	(△1.6)	(△1.6)	(-)	(0.1%p)	
•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08.2	△0.7*	25.8	
(GDP대비, %)	(40.4)	(39.7)	(39.6)	(39.5)	(△0.1%p)	(△0.9%p)	

* △0.5조원은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제상환 효과

II.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① 일자리 지원 확대

-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 : ('17) 473 → ('18안) 497 → ('18최종) 516만원/월
 -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인상 지원*
 - * 종사자 연간 급여:
 - ('17) 23 → ('18안) 23 → ('18최종) 25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만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지원
 - *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
 - : ('17) 2,134 → ('18안) 2,134 → ('18최종) 2,234천원
-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 확대(약 +1,700명)
 - * 장애인활동지원
 - : ('17) 5,461 → ('18안) 6,717 → ('18최종) 6,907억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

원과 병행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911억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17) 5,202 → ('18안) 7,021 → ('18최종) 8,932억원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신규 90%)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 유도

* 지원임금(160 → 190만원 미만),

지원수준(신규 70 → 80~90%, 기존 40% 유지)

②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영유아)** 영유아보육료 조기 인상('18.3월 → 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확대(+912억원)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 ('17) 31,292 → ('18안) 31,663 → ('18최종) 32,575억원
- **(청소년)** '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신규 지원*(+4억원)
 - * 준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종합계획수립 등
- **(어르신)** 경로당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 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21억원)
 - * 쌀 20kg 7 → 8포대 지원 확대(연간)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 확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17) 28 → ('18안) 37 → ('18최종) 39억원

•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17) 23 → ('18안) 24 → ('18최종) 25억원

*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17) → ('18안) → ('18최종) 7억원

-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개소 신설

* 맞춤훈련센터 신설
: ('17) 34 → ('18안) 34 → ('18최종) 51억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 ('17) 35 → ('18안) 39 → ('18최종) 59억원

• **(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임시정부기념관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21억원, '20년 까지 총 360억원)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신규 2.5억원) 및 임시정부기념관 조속한 건립 지원*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 ('17) 10 → ('18안) 28 → ('18최종) 74억원

• **(농어민)**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및 축산물 안전과 식물검역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 및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 ('17) → ('18안) → ('18최종) 45억원

**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 ('17) → ('18안) 10 → ('18최종) 15억원

-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추가 지원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 ('17) 104 → ('18안) 116 → ('18최종) 159억원

** 도축검사운영
: ('17) 149 → ('18안) 155 → ('18최종) 200억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 ('17) 962 → ('18안) 962 → ('18최종) 975억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 ('17) → ('18안) → ('18최종) 5억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 소상공인 역량강화
: ('17) 60 → ('18안) 51 → ('18최종) 60억원

③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주거)**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임차인 보호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17) 250 → ('18안) → ('18최종) 300억원

-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43억원)

• **(의료)** 중증외상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212억원)

* 권역외상센터 지원
: ('17) 440 → ('18안) 400 → ('18최종)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 ('17) 133 → ('18안) 143 → ('18최종) 15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

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차질없는 이행 뒷받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17) 6,689 → ('18안) 7,238 → ('18최종) 8,058억원

• **(교육)**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 동포 교육 강화

– 웨이하이에 한국학교를 신설(+11.3억원)하여 중국학교 한국부 운영 중단에 따른 교육공백 해소

* 웨이하이에서 버스사고로 우리나라 유치원생 10명 사망('17.5.9.)

–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학술대회 확대, 통합포털 구축

*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 ('17) 41 → ('18안) 44 → ('18최종) 49억원

* 교육지원 통합포털 구축(신규)
: ('18안) 1.2 → ('18최종) 4.2억원

2 경제활력 제고

1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 확대

* 광주-강진고속도로
: ('17) 880 → ('18안) 455 → ('18최종) 1,455억원

* 도담-영천 복선전철
: ('17) 7,080 → ('18안) 2,560 → ('18최종) 3,360억원

* 서해선 복선전철
: ('17) 5,883 → ('18안) 5,170 → ('18최종) 5,883억원

* 이천-문경 철도건설
: ('17) 2,876 → ('18안) 2,280 → ('18최종) 2,876억원

* 호남고속철도 2단계
: ('17) 730 → ('18안) 154 → ('18최종) 288억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 개선 지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부산) ('17) → ('18안) → ('18최종) 570억원

2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대

•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

* 동두천국가산단 진입도로
: ('17) → ('18안) → ('18최종) 15억원
전주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 ('17) → ('18안) → ('18최종) 5억원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복측진입도로
: ('17) → ('18안) → ('18최종) 24억원
*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 ('17) → ('18안) → ('18최종) 6억원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 중소기업 모태펀드
: ('17) 300 → ('18안) → ('18최종) 2,000억원

•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 확대

* 기술창업연계지원(TIPS)
: ('17) 590 → ('18안) 716 → ('18최종) 736억원

3 국민 안전 확보

1 지진 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 **(지진 예측기능 강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조사, 해저단층 지도제작 등 지진 예측능력 강화

* 지하 단층구조 조사
: ('17) → ('18안) 15 → ('18최종) 28억원

* 해저단층 지도제작
: ('17) → ('18안) → ('18최종) 5억원

• **(지진 대응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 ('17) 15 → ('18안) 5 → ('18최종) 15억원

* 지진 및 해일 대응(땅밀림)
: ('17) 16 → ('18안) 35 → ('18최종) 133억원

• **(내진보강 확대)**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내진보강 추가 지원

*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 ('17) 18 → ('18안) 500 → ('18최종) 1,000억원
* 도시철도 내진보강
: ('17) 220 → ('18안) 130 → ('18최종) 378억원

2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404억원, 전년 대비 +7.0%)

• **(北 핵 · 미사일 위협대비)**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원 확대**

* Kill Chain(선제타격), KAMD(미사일 방어), KMPR(대량 응징 · 보복)
**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3축 관련 4개 신규전력 추가 반영

• **(대북억제 전력보강)** 北 장사정포 대응 및 대함 · 대잠 작전능력 보강 등을 위한 신규전력 추가 반영 및 투자 확대

* 230mm급 무유도탄(R&D),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전력

• **(복무여건 개선)** 軍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 및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설치 확대

* 사격장 10개소 시설보강,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20,400여 대 보급

3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살충제 계란 방지)**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 · 현장검증 장비 확충

* 계란검사재료비
: ('17) → ('18안) → ('18최종) 4억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17) 156 → ('18안) 151 → ('18최종) 190억원

• **(유해 생리대 방지)** 의약외품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 · 품질 검사 지원 확대

*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 ('17) 10 → ('18안) 9 → ('18최종) 13억원

4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및 범피해자 보호 강화

• 구로 분배농지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응하여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대폭 확대

* 국가배상금
: ('17) 1,000 → ('18안) 1,000 → ('18최종) 2,000억원
* 형사보상금
: ('17) 275 → ('18안) 275 → ('18최종) 332억원

•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판단) 등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스마일센터
: ('17) 30 → ('18안) 30 → ('18최종) 60억원
* 해바라기센터
: ('17) 4 → ('18안) → ('18최종) 4억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17) → ('18안) 4.5 → ('18최종) 10억원

5 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하수관로 정비
: ('17) 7,355 → ('18안) 6,374 → ('18최종) 6,878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 ('17) 2,537 → ('18안) 2,623 → ('18최종) 3,547억원

• 지진 · 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 사업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 ('17) 4,743 → ('18안) 4,300 → ('18최종) 4,600억원

III. 향후 계획

1 2018년 예산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8일(잠정)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2 철저한 집행 준비로 민생사업 효과 제고 기대

-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 필요
-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

참고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18예산			증 감		
	'17예산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17대비 (C-A)	증가율
◇ 총 지 출	400.5	429.0	428.8	△0.1	28.3	7.1
1.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44.7	△1.5	15.2	11.7
2. 교 육(교부금 제외)	57.4 (14.5)	64.1 (14.6)	64.2 (14.6)	0.0 (0.1)	6.8 (0.2)	11.8 (1.2)
3. 문화·체육·관광	6.9	6.3	6.5	0.1	△0.4	△6.3
4. 환경	6.9	6.8	6.9	0.12	△0.0	△0.3
5. R&D	19.5	19.6	19.7	0.03	0.2	1.1
6. 산업·중소·에너지	16.0	15.9	16.3	0.3	0.2	1.5
7. SOC	22.1	17.7	19.0	1.3	△3.1	△14.2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7	0.1	0.1	0.5
9. 국 방	40.3	43.1	43.2	0.04	2.8	7.0
10. 외교·통일	4.6	4.8	4.7	△0.1	0.2	3.5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1	0.2	0.9	5.1
12.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63.3 (22.6)	69.6 (23.7)	69.0 (23.0)	△0.7 (△0.7)	5.6 (0.4)	8.9 (1.8)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 본 자료는 2017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17.12.5(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소득세법

①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 소득 비과세(소득세법 §94①)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수정이유> K-OTC 활성화 지원

②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104 ①, 부칙 §1 3호)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중소기업 외: '18.1.1. 이후 양도분

<수정이유> 중소기업 대주주는 '16년 세율이 인상 (10% → 20%)된 점 감안

③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단축
(소득세법 부칙 §1 3호)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 시행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 시행 • (좌 등)

<수정이유> 자녀 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

2. 법인세법

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 ('18귀속) 60% → ('19귀속)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귀속) 70% → ('19귀속) 60%

<수정이유>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②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 ('17.10월말 기준) •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 ('18~'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수정이유>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③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세법 §44의3, §46의3, §47)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사업목적 구조조정,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로 완화

<수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④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정부안		수정안	
과 표	세 율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2,000억원	(좌 동)	200~3,000억원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5%

<수정이유>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5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세법 §57의2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 (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국외원천소득의 14% → 10%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한도(14%) 유지

<수정이유> 해외간접투자 지원

10월말 관리재정수지, 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개선

* 본 자료는 2017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중 「10월말 관리재정수지, 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수입)** 10월 국세수입은 29,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조원 증가(1~10월 누계 기준 236.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2조원 증가)하였다.

- **(부가가치세*)** '17년 3분기 소비 증가** 등 경기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2.5조원 증가(1~10월 누계 기준 5.6조원 증가)하였다.
- 전년동월 대비 증가폭 2.5조원은 '08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규모이다.

* 부가가치세는 7~9월 중 이루어진 재화·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10월에 신고·납부

** 소매판매액(경상, 전년동기 대비, %) : ('16.4/4) 3.9↑ ('17.상) 3.9↑ (3/4) 5.7↑

***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 대비, %)

: ('16.4/4) 2.4↑ ('17.상) 2.8↑ (3/4) 3.8↑

**** 역대 전년동월 대비 2조원 이상 증가사례(조원)

: ('12.7.) 2.46 ('12.1.) 2.3 ('10.1.) 2.2 ('08.1.) 3.2

- **(소득세)**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16년은 8·9월 분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증가(1~10월 누계 기준 5.0조원 증가)하였다.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1조원 증가(1~10월 누계 기준 7.1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p)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A)	10월(B)	1~10월(누계, C)	진도율(D=C/A)	추경(E)	10월(F)	1~10월(누계, G)	진도율(H=G/E)	10월(F-B)	1~10월(G-C)	진도율(H-D)
◇ 국세수입	232.7	26.6	215.7	92.7	251.1	29.8	236.9	94.4	3.2	21.2	1.7
○ 일반회계	225.8	25.6	209.8	92.9	244.0	28.9	231.0	94.7	3.3	21.2	1.8
- 소득세	63.3	5.0	55.4	87.5	69.6	5.4	60.4	86.7	0.5	5.0	△0.8
- 법인세	51.4	2.7	49.6	96.5	57.3	2.7	56.7	99.0	0.1	7.1	2.5
- 부가가치세	59.8	13.7	60.2	100.7	62.6	16.3	65.8	105.2	2.5	5.6	4.5
- 교통세	14.8	1.2	12.9	86.6	15.4	1.2	13.1	85.0	△0.0	0.2	△1.6
- 관세	8.3	0.7	7.0	83.9	9.0	0.7	7.3	81.3	△0.0	0.4	△2.6
- 기타	28.2	2.3	24.9	88.0	30.2	2.6	27.7	91.9	0.3	2.9	3.9
○ 특별회계	6.9	1.0	5.9	85.8	7.1	0.9	6.0	83.7	△0.1	0.0	△2.0

* 소득세 60.4조원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 1.7조원을 차감한 후 금액임

*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는 8.6조원임

- **(집행실적)** '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7조원 중 10월 누계 239.4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85.0%이다.

(단위: 조원, %, 누적기준)

구분	'17년					
	연간계획(A)	2/4계획	3/4계획	9월실적	10월실적(B)	집행률(B/A)
합계	281.7	163.5	222.3	219.4	239.4	85.0
○ 중앙부처	233.8	135.7	187.0	185.2	203.2	86.9
○ 공공기관	47.9	27.8	35.4	34.1	36.1	75.4

- **(재정수지)** '17년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7.2조원 흑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7.4조원 적자이다.

*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6조원 흑자) 제외

-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8조원 개선되었다.

(단위: 조원)

	'16년			'17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증감(B-A)
	'16년도 (추경기준)	10월 (당월)	1~10월 (누계, A)	'17년도 (추경기준)	10월 (당월)	1~10월 (누계, B)	
◇ 통합재정수지(a)	2.5	9.1	17.3	13.0	14.6	27.2	10.0
◇ 사회보장성기금(b)	41.5	2.5	33.4	41.9	3.4	34.6	1.2
◇ 관리재정수지(a-b)	△39.0	6.6	△16.1	△28.9	11.2	△7.4	8.8

- **(국가채무)** '17년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2.0조원 증가한 629.4조원이다.

(단위: 조원)

	'15년	'16년		'17년(잠정)			증감	
	결산(A)	결산(B)	전년대비 (B-A)	추경기준	9월(C)	10월(D)	전년대비 (D-B)	전월대비 (D-C)
○ 중앙정부 채무	556.5	591.9	35.4	633.5	627.3	629.4	37.4	2.0

- **(종합)**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와 함께, 세수 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면서
- 지출구조 혁신, 차질 없는 재정집행 관리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안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본 자료는 2017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안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내용

①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 조정·명확화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 비과세

- (대상)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

* 예시: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원불교) 교의회 등

** 예시: (불교)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자원비 (개신교)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등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

* (현행)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②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 (현행)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

③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 (현행)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 원천징수

연소득 미확장: (월지급소득×12-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12

연소득 확장: (연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기본세율-자녀·

표준세액공제

-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마련

*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나타낸 표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세액 산출사례

(단위: 원)

연간지급액(월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2,000만원(월 167만원)	1,000	0	0
4,000만원(월 333만원)	83,830	61,130	1,220
5,000만원(월 417만원)	163,230	140,730	50,730

가정: (1인가구) 본인 (2인가구) 본인+배우자 (4인가구) 본인+배우자+자녀 2명(20세이하)

-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 완화
 - * (현행)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
 -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 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허용*
 -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④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범위·절차 규정화

- 구분 가장 선언적인 규정 신설
 -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가장*하는 선언적 규정 마련
 -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
-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자기시정 기회 부여)

II. 기타 보완방안

①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 마련

-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국세청에서 정할 예정

②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 ①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세 특례제한법)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논의
- ②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소득세법)
 - 시행초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참고 종교인소득 과세 의견수렴 경과

1. 그간의 경과

- 종교계 의견 수렴
 - 부총리-종교계 지도자 예방: 7대 종교(9개 종단, 8~10월)
 - 제1차관 주재: 3차례 간담회 개최(11.14, 24)
 - 소득법인세정책관 주재: 4차례 간담회(6~11월) 등
 - 국회의원 주재: 김진표의원(11.13.), 이언주의의원(11.14.) 각 1차례 간담회
 - 실무 협의: 방문면담 21회(7~9월.) 개신교 및 불교 실무협의 각 3회

■ 납세지원 체계 구축 등 준비

- 납세지원 체계 구축
 - ① 전담인력(395명) 운용('17.8~)
 - ②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 개설('17.10.)
 - ③ 종교인 홈택스(전자납부 시스템) 시스템 준비 중
- (교육·홍보) 홍보 리플릿 배포(5만부, '17.9.), 안내책자 배포 준비, 방문 설명회(4회) 실시, 지역별 설명회(14회) 개최

2. 향후일정(안)

-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11.30.~12.14.)
 - * 입법예고 기간 중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 차관회의(12.21.), 국무회의(12.26.)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12.29.)

재정포럼

2017년 12월호 통권 제25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12월 15일 발행 / 제21권 제12호(통권 제25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မ်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